

최종보고서

기부금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2010. 8.

유경문 · 이선성 · 박기백

한국재정학회

목 차

I. 서론	1
II. 기부금에 대한 이론	3
1. 성격	3
2. 모형	4
3. 시사점	8
III. 기부금 현황	10
1. 기부금 관련 조세법규	10
2. 기부 현황	17
3. 기부금 단체 관리제도	21
IV. 외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29
1. 미국	29
2. 일본	35
3. 영국	53
4. 호주	56
5. 독일	60
6. 기타 국가의 경우	65
7. 시사점	66
V. 주요 쟁점	70
1. 지원 방식	70
2. 조세지원 강도 및 단체 분류	78

3. 금전 이외의 기부	91
4.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방안	100
5. 정치자금 세액공제	102
VI. 결론	104
1. 비합리적 분야의 개선	104
2. 기부 문화 활성화	105
3. 투명성 강화	109
참고문헌	112

I. 서론

- 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조세지원
 -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수단으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준비금제도나 특별감가상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사용
 - 세제상의 혜택은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상대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해당 분야에 대한 자원 분배(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

- 기부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비영리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
 - 따라서 공익성이 있는 민간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
 - 민간의 기부는 기업의 기부와 개인의 기부로 구분되는데 외국의 경우는 기부는 주로 개인의 기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개인의 기부가 전체 기부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태¹⁾

- 이론적으로 기부는 민간이 공급한 공공재(privately provided public goods)
 - 이는 기부금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
 - 이러한 공공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을 실시

- 기부 분야도 다른 조세감면과 마찬가지로 기부의 가격을 낮게 함으로서 기부를 유도하는 것
 - 다만 조세감면은 정부의 세수 손실을 수반하므로 조세감면으로 유인된 기부액수와 정부의 세입 손실 크기가 비교 대상

1) 조선주·박태규(2007, p. 66)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개인기부가 민간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 이상이고, 우리나라도 2000년을 기점으로 개인기부가 민간기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 따라서 세제혜택에 대한 기부자의 반응(탄력성) 정도가 관심의 초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부금과 관련된 세제에 다수의 문제가 존재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도가 기부금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현재의 기부금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도 불확실
 - 특히,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보유
 - 기부금단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기부자가 공익적 활동이 제대로 수행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이밖에 현행 금전기부금 위주에서는 기부금 관련 다수의 논란이 존재
 - 용역 또는 현물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 여부
 - 해외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 여부
- 따라서 기부금의 분류, 지원 강도, 사후 관리 방안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
 - 특히,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 주요 목표
 - 복잡한 기부금 지원제도를 단순화하고 기부금간 형평성 제고 및 납세 순응비용을 축소하는 데 있으며
 - 기부금 단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접근성 제고로 간접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

II. 기부금에 대한 이론

1. 성격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을 의미²⁾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비영리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
 - 또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해당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보유

- 따라서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
 - 자신 또는 특수관계자와 연관이 없는 타인에게 지출될 것
 - 자신의 사업과 관계가 없을 것
 - 기부금으로 인한 타인의 보상이 없을 것
 - 기부하는 재화나 용역이 재산상의 가치를 지닐 것

- 법적으로는 기부금을 소비 또는 소득 이전으로 파악
 - 기부금을 납세자의 소비가 아닌 납세자간 소득의 이전으로 보기도 함³⁾
 - 그러나 warm glow giving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납세자는 기부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므로 소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
 - 민태욱(2008)에서 지적하듯이 기부 여부의 결정, 대상단체의 선택 및 기부금액 등을 납세자가 결정하므로 소비로 보는 것이 적당
 -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전이나 소비나 모두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대상에 대한 소득이전 또는 소비인가가 중요하지 않음

- 경제학적으로는 기부금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에 사용되므로 기부

2)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의 차액도 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3) 민태욱 (2008) 참조

금은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재(privately provided public goods)

- 따라서 정부의 지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⁴⁾⁵⁾
 - 다시 말하면, 공공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면 기부자의 기부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역도서관이나 교육방송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해당 부문에 대한 기부 욕구가 저하됨

□ 기부금의 공공재 또는 바람직한 재화(merit good)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가 기부금에 대해 조세감면을 실시

-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국방헌금, 위문금품,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한도내에서 전액 공제
- 반면 공익성이 있는 부문에 대한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은 2009년도 말까지는 소득금액의 15%(종교단체10%), 이후에는 소득금액의 20%(종교단체 10%)를 소득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
- 특히,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하고, 추가분은 법정기부금에 준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 민태욱(2008)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여 공익단체를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한다고 보고 있음
 - 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활동 등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재 공급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 정당성을 보유

2. 모형

□ 정부가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실시

- 이는 기본적으로 기부금이 외부효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 다시 말하면, 개인의 기부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

4) Abrams and Schmitz(1978), Warr(1982, 1983), Roberts(1984), and Bernheim and Bagwell(1986).

5) 조선주·박태규(2007) 등 구인(Crowding-in)효과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논문도 있다.

문에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적 최적을 달성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기부가 행해지도록 정부가 조세지원이라는 수단을 사용

□ 이를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가. 가정

□ 일반적으로 외부효과의 내생화 문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한 부분균형 분석을 실시

-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효과를 포함한 사회적 수요가 수요곡선
- 정부의 조세 및 재정지원으로 사회적 균형을 달성

□ 이러한 부분균형 방식은 다수의 문제점을 보유

- 정책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를 알 수 없음
- 경제체계 내에서 공급주체간의 조정과정이 전혀 고려될 수 없음
- 따라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공급주체간의 조정 과정과 조세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조세지원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위한 가정

- 재화는 기부금처럼 외부효과를 가지는 재화(z)와 그렇지 않은 사유재(x) 두 가지만이 존재
- 사회에 N명이 존재하고(참자 i는 개인), w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가정
- 개인의 효용을 U라고 하고, 효용은 기부금에 대한 지출 및 여타 재화에 대한 지출과 기부금의 사회적 총합의 함수로 가정
- 본인을 제외한 기부금은 $Z_i \equiv Z - z_i$ 로 표기

□ 효용함수

$$U=U(x, z, Z)^6, \quad Z = \sum z_i + z_g \quad (z_g \text{는 정부의 기부}) \quad (1)$$

□ 추가 가정

- 전체 기부 규모인 Z 는 i 번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에 의해서도 공급되므로 모형 내에서 Z 의 균형 값이 결정되는 과정이 필요
-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Nash 균형을 가정7)
 - 이 경우 개인이 지원재화에 대한 지출 수준 결정은 다른 개인의 지원재화에 대한 지출(Z_i)이 주어진 것으로 여기므로 개인이 결정하는 지원재화에 대한 투자수준은 결국 지원재화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

나. 조세지원이 없는 경우

□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최적화 수식

$$\max_{x_i, z_i} U_i = U(x_i, z_i, Z), \quad s.t. \quad x_i + z_i = w_i, \quad Z = \sum_{i=1}^N z_i \quad (2)$$

- Nash 균형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최적화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다른 개인의 기부 금액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므로 최적화 조건은 다음과 같음

$$\partial U / \partial x = \partial U / \partial z + \partial U / \partial Z \quad \Rightarrow \quad U_x = U_z + U_Z \quad (3)$$

- 식 (3)이 의미하는 바는 기부금 이외의 재화로부터의 한계효용이 기부금의 한계효용 + 기부금 총량이 자신에 미치는 외부효과와 같아지는 점에서 자산의 기부금을 결정한다는 것
- 식 (3)에서 i 번째 개인의 외생변수는 소득과 다른 개인의 기부금액 (Z_i)

6) 지원재화에 대한 개별개인의 지출인 z 가 각각 다르게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가정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공공재의 형태로 총지출량만이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의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지만 정책적인 시사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7) Nash 균형은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재를 다룬 다수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Warr(1982), Roberts(1984, 1987), Bergstrom et. al.(1986) 등.

□ 사회적 최적

- 개인의 효용의 합을 최대로 하는 것
- 따라서 사회적 최적의 목적함수는 $\sum U_i$
- 선택변수는 i 번째 개인의 기부 수준

$$U_x = U_z + \sum_i U_z \quad (4)$$

□ 분석결과

- 최적화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기부금 이외의 재화로부터의 한계효용이 기부금의 한계효용 + 기부금 총량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외부효과의 합과 같아지는 점에서 자선의 기부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 식 (3)과 (4)를 비교해 보면, 개인의 최적화에 따른 기부금 수준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음
 - 이는 개별 개인이 기부 수준을 결정할 때 다른 개인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

다. 정부의 개입

□ 정부가 사회적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하거나 조세지원이 가능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부금이 외부효과를 가질 경우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기부금 수준은 사회적 최적보다 낮음
-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하므로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세금과 관련

□ 개인의 세부담과 조세지원

- 기부금을 소득공제하는 경우에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w - z$
- 세율을 t 라고 하면 개인의 세부담은 $t(w - z) = tw - tz$
 - 다시 말하면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부담의 축소 규모는 세율 \times 기부금액
-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축소 규모를 나타내는 수식은 동일

- 다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세율이 있는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는 차이가 존재

$$\text{소득공제의 세수 손실} : t_m(\text{개인의 세율}) \times z \quad (5)$$

$$\text{세액공제의 세수 손실} : t_c(\text{세액공제율}) \times z$$

□ 수식 표현

- 논의의 편의상 정부가 개인으로부터 거둔 세금은 r 로 표기하고 전액 기부금 대상 분야에 사용한다고 가정
 - 따라서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y=w-r)$
- 정부가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s)의 조세지원을 하는 것
 -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부금의 상대가격이 $(p=1-s)$ 로 변하는 것
 - 개인의 가용재원이 $w-r+sz$ 로 되어 소득이 sz 만큼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
- 위의 두 경우를 고려할 경우에 개인의 최적화 문제와 최적화조건

$$U = U(x, z, Z), \quad \text{s.t. } x + pz = y, \quad (6)$$

$$p U_x = U_z + U_Z \quad (7)$$

□ 식 (7)과 (4)를 비교해 보면,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비율

$$s_i = \sum_{j \neq i}^N U_{jZ} / U_{x_i} \quad (8)$$

3. 시사점

□ 식 (8)의 결과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

8) 최적 보조비율의 결과는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최적 세율을 연구한 Sandmo(1975), Johansson(1997)의 결과와 유사하다.

□ 시사점

- 첫째, 다른 개인에 주는 외부효과가 클수록 정부 지원의 강도는 강해야 함
- 둘째, 정부가 직접 기부금 분야에 지출하는 것보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이론적인 면에서 우수
 -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사회적 최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조세지원방식은 사회적 최적 달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
- 셋째, 외부효과의 합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함
 - 외부효과의 합이 클 경우 s 의 크기가 1보다 크게 되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
 - 외부효과가 큰 경우 정부의 선택은 직접적으로 지출을 하는 수밖에 없음을 의미 (예를 들면 치안, 국방과 같이 외부효과가 아주 강한 재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지출이 바람직함)

□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것과 조세지원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 가가 문제

- 예를 들어 정부가 조세지원을 하는 액수가 1원이라면 조세지원으로 인해 증가된 개별개인의 지출이 1원보다 큰가 하는 점

□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격탄력성이 1보다 커야 한다는 것

-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i 만 살펴보면 개인의 기부와 정부의 손실을 합한 금액은 $z - sz = pz$
-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커지면(가격이 내려가면) 전체 규모(pz)가 증가하여야 하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 규모가 감소하여야 함
- 즉, 정부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도를 높이는 경우에 기부금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기부금이 가격탄력적인 재화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partial(pz)/\partial p = z + p(\partial z/\partial p) < 0 \Leftrightarrow -(\partial z/\partial p)/(z/p) > 1 \quad (9)$$

Ⅲ. 기부금 현황

1. 기부금 관련 조세법규

가. 개요

- 조세법상 기부자(개인·법인) 및 기부금단체에 따라 기부금의 종류, 공익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함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
 - 소득공제(일부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병행)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로 규정
 - 동일한 기부금이 개인과 법인에 따라 구분되어 조세지원에 대한 차이를 둠

[표 Ⅲ-1] 기부금별 소득금액 대비 소득공제 한도 비교

구 분	개인 기부금	법인 기부금
법정기부금	100%	50%
특례기부금	50%	50%
지정기부금	20%(종교단체 10%)	5%

- 조세법상 기부금 관련 법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단체 및 공제한도를 규정, 또한 일부 간주기부금(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규정을 두고 있음.
 - 법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34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2
 - 특례지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①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34 ①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간주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나. 개인

- 사회적 통합과 기부 및 나눔의 문화 활성화, 사회·문화적 성숙과 함께 기부 문화 관련 제도의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개인중심의 기부문화가 형성되어야 함.
 - 2000년 개인 대 법인의 비중은 50.1%:49.9%에서 2001년 이후 개인비중의 기부금 60%:40%로 증가하였고,
 - 개인 기부금액도 1999년 0.8조원에서 2008년 4.2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

- 이는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의 기부문화정착을 위한 꾸준한 세법개정과 법인의 기부금 공제대상을 축소하여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축소한 결과로 보여짐.
 - 지정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전환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 기부금,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등
 - 소득공제대상 확대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
 - * 2008년부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
 - 현행 기부금 공제율 법정기부금 100%, 특례기부금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지정기부금의 경우 20%(종교단체 10% 유지)로 확대
 -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연혁
 - : (~'99) 5% → ('00~'07) 10% → ('08~'09) 15% → ('10) 20%

[표 III-2] 개인의 기부금 종류별 공제대상 및 법규현황

유 형	공 제 대 상	관련법규
<p>법 정 기부금</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 ⑩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⑪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만원까지는 110분의100 세액 공제.</p>	<p>소득세법34 ② 소득세법령79 조의2 조특법76조①</p>
<p>특 례 기부금</p>	<p>①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결식아동 또는 빈곤층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기부금 ⑤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한 금액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⑧ 여수박람회 등 국제행사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⑨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⑩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위한 신용대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p>	<p>조특법73 ①</p>
<p>우리사주 조합 기부금</p>	<p>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p>	<p>조특법88의 4 ⑬</p>
<p>지 정 기부금</p>	<p>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각호 기부금 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유아교육, 학술·장학·기술단체, 문화·예술, 환경, 종교, 의료법인, 주무관청허가 받은 요건충족 비영리법인 등 나. 유아교육법 등 공익성기부금</p>	<p>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장학금 등, - 공익신탁,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목적으로 지역새마을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30 여곳 기부금 <p>다. 영업자가 조직한 등록된 단체 또는 조합으로 회비중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등</p> <p>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회비</p> <p>③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p> <p>※ 행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p>	
--	--	--

[표 III-3] 기부금 유형별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 한도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30%
지 정 기부금	종교 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1)+(2)	(1)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 10% (2) ①,② 중 적은 금액 ①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 10% ②종교단체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지정기부금기준소득금액 × 20%

다. 법인

- 법인 기부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의 5%~20%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의 경우 5%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법인의 경우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기부금, 특별회비와 등록되지 아니한 협회나 조합에 지급하는 특별회비 등도 기부금으로 보고 있음.

[표 III-4] 법인의 기부금 종류별 공제대상 및 법규현황

유 형	공 제 대 상	관련법규
법 정 기부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의 구호금품 가액 ④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시설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법인세법24②
특 례 기부금	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②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대학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 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특법73조

	<p>④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p> <p>⑤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p>⑥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 연구원 ㉢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p>⑦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에 지출하는 기부금</p> <p>⑧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p> <p>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육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p> <p>⑩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p>	
지 정 기부금	<p>①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p> <p>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79조의2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령36조

	<p>② 기타 공익성 지정기부금</p> <p>㉠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p> <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p> <p>㉢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p>㉣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p>	
--	---	--

□ 법인 기부금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

○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5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 지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5%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표 III-5] 법인 기부금 유형별 손금산입 한도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이월결손금**) \times 50%
특례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이월결손금) \times 50%
지정기부금	(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지정기부금-이월결손금) \times 5%

* 차가감소득금액: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2009.1.1일 이후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2. 기부 현황

가. 전체적인 기부 추이

-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기부금 규모는 1998년 약 4,826억원에서 2008년 1조 6천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
 - 기부금의 증가 비율을 보면 1999년 약 36.7%가 감소한 반면 2000년에는 83.7% 증가하는 등 변동이 심한 상태

- 기부금 특별공제의 비중이 손금산입하는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 되었지만 향후에는 개인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998년의 경우에는 개인은 약 1천억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 법인은 약 3,663억원으로 개인보다 3배 이상 큰 상태
 - 그러나 2002년부터는 개인이 법인을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부터는 개인과 법인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태
 - 선진국과 같이 개인 위주의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법인의 기부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개인은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으로 향후에도 증가세가 클 것으로 예상

[표 III-6] 기부자 유형별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기부금 특별공제(개인)		기부금 손금산입(법인)		계	
	금액	증가비율	금액	증가비율	금액	증가비율
1998	1,163		3,663		4,826	
1999	1,164	0.09	1,891	-48.38	3,055	-36.70
2000	1,194	2.58	4,417	133.58	5,611	83.66
2001	2,986	150.08	4,270	-3.33	7,256	29.31
2002	4,022	34.70	3,551	-16.84	7,573	4.36
2003	4,702	16.91	4,083	14.98	8,785	16.00

2004	4,448	-5.40	4,530	10.95	8,978	2.19
2005	5,067	13.92	5,295	16.89	10,362	15.41
2006	5,045	-0.43	5,390	1.79	10,435	0.70
2007	6,054	20.00	6,670	23.74	12,724	21.93
2008*	8,309	37.24	7,735	15.96	16,044	26.09

주: *는 전망치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1999~2008, 이상신·박훈에서 재인용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 약 55만 7천명이 약 1조 4천억 원을 기부하고 있음
 - 기부금 특별공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원으로는 약 53만명, 금액으로는 1.26조원
 - 200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1.4% 정도, 금액은 8.76% 정도 증가하였으므로 1인당 기부금액은 약간 감소한 상태

[표 III-7] 기부자 유형별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 추이

(단위 : 명, 십억원)

연도	합계		기부금 특별공제		필요경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7	500,354	1,283.3	468,565	1,111.5	31,789	171.9
2008	557,159	1,395.7	529,352	1,259.7	27,807	136.0

자료 :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연보, 2010. 3

-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에는 1,000원당 16.6원, 2008년에는 16.4원을 기부
 - 기부금 신고인원의 증가에 비해 신고금액의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

나. 세부 내역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하는 인원도 많고,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0분위 기준 자료를 보면 최상위 계층이 인원 비중으로는 31.5%, 금액기준으로는 65.1%를 차지하고 있음
 -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은 인원이 0.8%로 낮은 상태이지만 금액으로는 바로 위 소득계층보다 더 많은 상태

[표 III-8] 소득 규모별 기부금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특별공제		필요경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상위 10%내	175,542	908,004	161,472	811,955	14,070	96,049
상위 20%내	125,581	233,092	119,947	217,513	5,634	15,579
상위 30%내	77,855	111,635	74,802	101,706	3,053	9,929
상위 40%내	53,572	58,070	52,078	54,754	1,494	3,316
상위 50%내	39,637	33,329	38,913	32,084	724	1,245
상위 60%내	30,358	20,292	29,925	19,471	433	821
상위 70%내	22,972	12,110	22,718	11,641	254	469
상위 80%내	17,029	7,020	16,821	6,657	208	363
상위 90%내	10,254	3,251	10,102	2,829	152	422
상위 100%내	4,359	8,905	2,574	1,079	1,785	7,826

자료 :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연보, 2010. 03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인원은 약 37.4만명, 금액은 1조원을 조금 초과하는 상태
 - 반면 여성은 인원이 약 18.1만명, 금액은 3천억원을 조금 초과하는 상태
 - 이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이 높은 남성에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같은 소득수준에서 더 많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III-9] 성별 기부금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특별공제		필요경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남성	374,690	1,076,671	353,294	970,998	21,396	105,673
여성	181,101	312,790	174,860	283,857	6,241	28,933

자료 :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연보, 2010.03

- 고소득층일수록 기부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득 대비 기부 금액이 큰 것은 아님
- 현재 제도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세금공제 혜택을 더 주고 있지만 소득 대비 기부금액은 중간소득계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인 계층은 1,000원당 기부금액이 20.1원으로 가장 기부가 많은 계층

[표 III-10] 기부 비중 : 인원 및 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신고인원	종합소득	신고인원	기부금액	신고비율	1,000원당 기부액
1천만 이하	1,980,835	9357.00	104,223	66,747	5.3%	7.1
2천만 이하	702,886	9848.00	107,756	119,828	15.3%	12.2
4천만 이하	436,815	12184.00	126,266	211,297	28.9%	17.3
6천만 이하	185,303	9044.00	80,186	175,993	43.3%	19.5
8천만 이하	94,914	6538.00	45,387	131,185	47.8%	20.1
1억 이하	54,366	4843.00	26,525	96,314	48.8%	19.9
2억 이하	88,875	12051.00	44,599	235,523	50.2%	19.5
3억 이하	19,894	4781.00	10,514	89,864	52.9%	18.8
5억 이하	11,400	4299.00	6,302	70,457	55.3%	16.4
5억 초과	9,144	12133.00	5,401	198,500	59.1%	16.4

자료 :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연보, 2010.03

3. 기부금 단체 관리제도

- 기부금 단체별로 투명성 관리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 문화정착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서 기부금에 대한 허위,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관리단체에 대한 투명성 관리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상 기부금단체 관리제도는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의 관리제도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를 두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36①1사목)과 소득세법 시행령(§80①5)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기별로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가. 공익법인 관리제도

-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며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비영리법인 유형
 -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공익법인 관리제도는 사실상 국가 또는 사회전체가 해야 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

로 관련 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공익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한 특례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
- 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일부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탈세 및 부의 편법 상속 등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 공익사업의 대상

- a.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b.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c.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d.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e.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f.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g.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h.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i.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함.

j. a호· g호 또는 h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도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결산사항을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4개월 이내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모집·활용내역, 주식관련사항 등을 국제청 인터넷을 통한 공시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a. 보고서등 제출의무

- 공익법인이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영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서를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 가산세를 부과

b.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10년간 보존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0.07%의 가산세 부과

c.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자산총액 10억원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0.07%

d.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총자산가액 100억원이상인 공익법인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 전용계좌개설·사용의무(종교법인 제외)

-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의 가산세를 부과

f. 결산서류 공시의무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함.
-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총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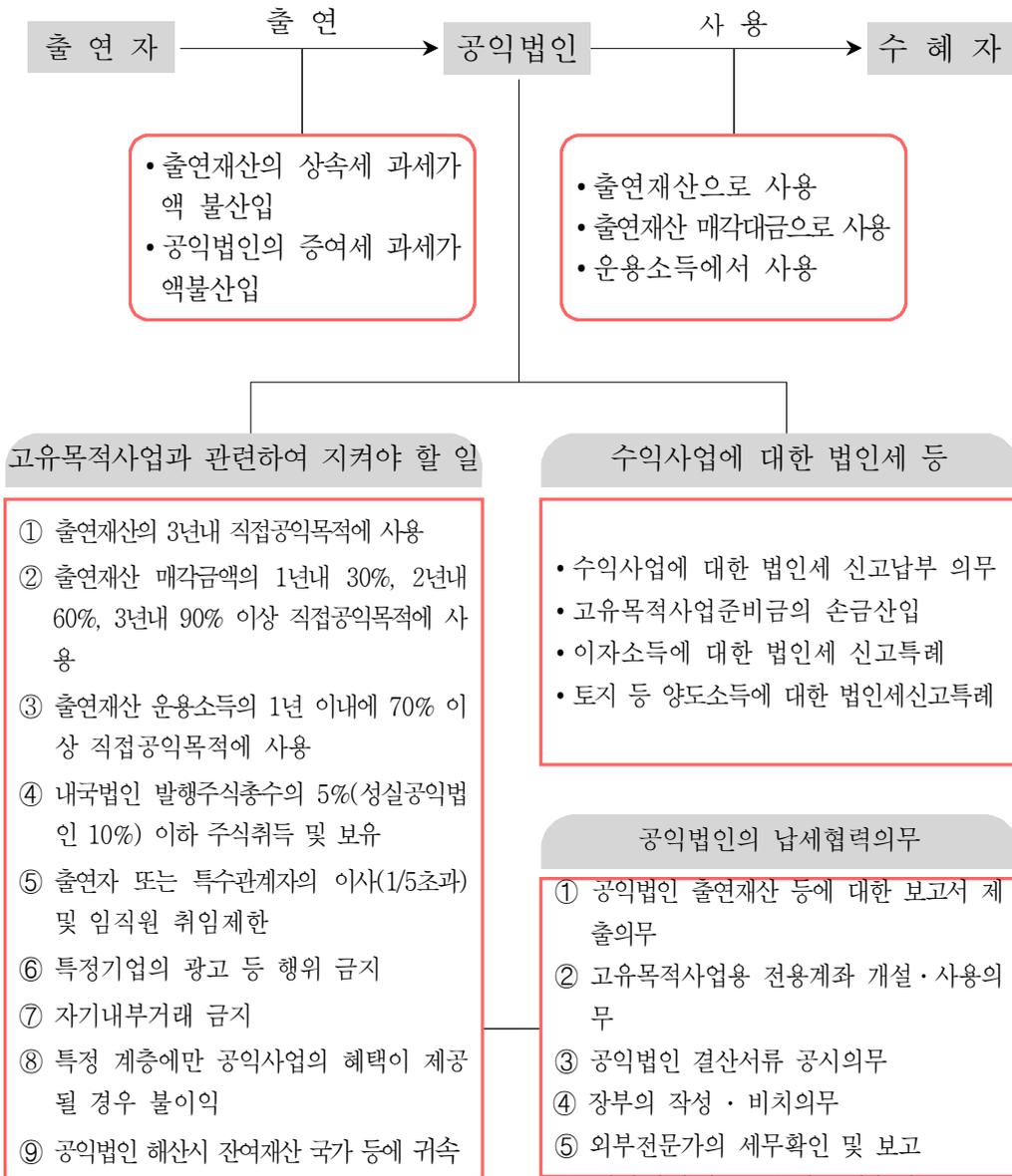
g.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자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제출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h.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년 1월31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경우에는 1%(지연제출:0.1%)의 가산세 부과

[그림 III-1] 공익법인 납세의무체계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나. 지정기부금 단체 관리제도

□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을 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

세법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제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우회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
- 순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정치활동 금지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

① 법인세법

□ 지정기부금 민간단체 요건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기부금 민간단체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민간단체 요건 이행실적보고 및 확인점검

- 지정기부금민간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지정기부금 요건의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

□ 지정기부금 민간단체 취소

- 법인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

반한 사실,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위반한 사실,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된 경우

② 소득세법

□ 지정기부금 민간단체 요건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지정기부금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다음 각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 전체 수입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 지정기부금 민간단체 취소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된 경우
- 지정기부금 민간단체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IV. 외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1. 미국⁹⁾

가. 개요

- 자선 목적 기부금의 정의
 -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은 일정 자격이 있는 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 만약 기부자가 기부로부터 일정액에 해당하는 유형의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일정액만큼은 차감하고 공제

-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품 및 단체
 - 소재 : 미국에 소재
 - 대상 : 종교, 자선,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아동 또는 동물 학대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신탁, 공동모금, 펀드, 재단 등
 - 미국 국세청 Code Section 501에 의거 비과세 대상 기관 목록을 수시로 발표

- 가치의 평가
 - 자선단체에 기부된 기부물품은 기부시점의 공정 시장가치로 평가
 - 특별한 지침은 없는 상태
 -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한 당사자간 자유로운 거래 가액

-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

9) '주요국의 기부금 지원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9,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신·박훈, 2009. 2.,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대주회계법인, 2010. 참조

- 다만 소득공제의 한도가 50%, 30%(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을 기부한 경우에는 각각 30%, 20% 한도 적용)로 구분
- 또한 전체 기부금 규모가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50% 및 30% 제한 규정이 있는 단체에 모두 기부하는 경우에는(①·②중 적은 것)
 - ① 총소득의 50%에서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 ② 총수입의 30% 한도 중에서 적은 것이 한도로 적용
 - 만약에 총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에 4천 달러를 소득 50% 한도 단체에 기부하고, 2천달러를 30% 한도기관에 기부한 경우라면
 - ①의 값은 5천 달러에서 4천 달러를 차감한 1천 달러가 되고,
 - ②의 값은 3천 달러
 - 따라서 적은 값인 1천 달러가 소득 30% 한도 기관의 한도가 되므로 소득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4천 달러와 한도인 1천 달러의 합인 5천 달러
 - 따라서 최소값 기준은 소득공제의 한도가 5천 달러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작용
- 소득의 50%가 적용되는 단체
- ①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y organization)
 - ② 민간 운영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
 - ③ 재단이 아니지만 성격상 재단의 활동을 하는 경우 (conduit foundation or common fund foundation of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로 구분
 -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y organization)로는 교회, 교육, 의료, 정부 관련 조직, 공익자선법인 지원법인 등이 이에 해당
 - 민간사업재단은 대부분의 수익과 자산을 직접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단체를 의미
 - Income Test를 충족시켜야 하고, Asset Test, Expenditure Test, Support Test 중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함
 - 그러나 기부 자산이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이면 한도가 30%
- 소득의 30%가 적용되는 단체

- 위의 경우는 아니지만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 단체(qualified organization)
 - 기부 자산이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이면 한도가 20%
- 따라서 소득공제의 혜택이 인정되는 단체 중에서 정부, 교육, 의료, 종교단체처럼 공공자선단체이거나 자선활동이 주목적인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50% 한도가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0% 한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소득공제의 혜택이 인정되는 단체의 구분
- 미국 내에 설립되었거나 미국정부의 법령에 따라 미국에 설립된 단체이며 설립목적이 종교, 자선, 교육, 과학, 아마추어 스포츠 등인 경우 (국제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로 인정)
 - 미국정부 및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 퇴역 군인
 - 숙박제도, 비영리 장묘 등의 단체

나. 기타

① 단체 관리

- 면세자격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함
- 설립 당시 면세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IRS의 조직테스트와 운영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함
- 조직테스트(Organization test)는 단체의 설립 및 운영상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
 - 정관에 연방소득세법 §501(c)(3)의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고
 - 그 목적을 위하여 기관을 운영한다는 점
 - 기관의 수입이 이사나 관리자, 수탁자 기타 개인에게 배분되지 않으며
 - 청산을 할 때에는 §501(c)(3)의 면세목적에 분배하거나 다른 면세기관에 분배

하며

-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 운영테스트(Operational Test)란 기관의 운영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
 - 기관의 사업활동은 면세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 그 비용지출은 규모나 자금조달 등에 비추어 상응한 것인지
 - 자금조달에 있어서 투자소득이 아닌 자발적인 기부에 의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익성테스트에 있어서 연간 수입의 33%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요구¹⁰⁾

□ 이러한 테스트를 거쳐 면세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정기적인 조사가 행해짐

- 면세자격 승인시의 심사에는 신청단체의 활동실적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의 정관 내지 규약에 기재된 목적, 잔여재산의 귀속, 재무상황 등 형식적인 면에서의 심사가 중요시되고
- 정기심사시에는 재산이나 자금이 내부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가 중요시¹¹⁾

10)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2008」, 아름다운북, 2008.12, p.69.

11) 岩田陽子, 위의 논문, pp.36-37.

[표 IV-1] 미국 연방세법 501(c)(3)조의 유형별 단체 현황

조문	면세단체유형	단체수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271,742	1,312,647	1,354,395	1,399,558	1,444,905
501(c)(1)	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14	18	20	48	88
501(c)(2)	재산소유권 보유 회사	7,125	7,042	7,009	6,984	6,998
501(c)(3)	교회,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	733,790	773,934	819,008	865,096	909,574
501(c)(4)	사회복지단체	139,533	138,927	137,037	136,882	137,526
501(c)(5)	노동, 농업조합	64,804	63,716	63,456	62,944	62,246
501(c)(6)	기업협회	79,864	81,493	82,246	82,706	83,712
501(c)(7)	사교 및 오락클럽	66,691	67,044	67,246	67,289	68,175
501(c)(8)	친목단체	84,507	84,519	81,980	81,112	80,193
501(c)(9)	자원고용인단체	14,240	13,886	13,595	13,292	13,173
501(c)(10)	국내친목단체	21,962	22,802	23,487	23,531	23,096
501(c)(11)	퇴직교사를 위한 기금	13	14	15	15	15
501(c)(12)	구제생명보험협회	6,423	6,462	6,489	6,500	6,553
501(c)(13)	공동묘지사업체	9,792	9,963	10,132	10,269	10,424
501(c)(14)	신용협동조합	4,378	4,408	4,320	4,409	4,471
501(c)(15)	상호보험회사	1,251	1,296	1,342	1,423	1,608
501(c)(16)	곡물경작 지원단체	25	23	22	23	24
501(c)(17)	보조실업수당 신탁	533	518	501	490	477
501(c)(18)	고용인 연금신탁	1	2	2	1	1
501(c)(19)	전쟁참전자 단체	35,682	35,428	35,249	35,263	35,227
501(c)(20)	법률서비스 단체	56	-	-	-	-
501(c)(21)	탄진폐증 신탁	28	28	28	28	28
501(c)(22)	중복취업자 연금	-	-	-	-	-
501(c)(23)	1880년이전 설립퇴역군인협회	2	2	2	2	2
501(c)(24)	ERISA 제4049조에 기술된 신탁	1	1	1	1	1
501(c)(25)	연금등을 위한 지주회사	1,017	1,107	1,192	1,236	1,274
501(c)(26)	주후원 건강보험등	7	9	9	9	9
901(c)(27)	주후원 고용보험등	3	5	7	5	10

② 기부하는 자산

- 미국의 경우에는 기부하는 자산은 현금 및 현물

- 사실상 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수표나 카드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기부도 소득 공제의 대상
 - 이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의 시점을 결정
 - 현금, 수표 및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은 기부받은 단체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시점
 - 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카드로 기부금액을 결제하는 시점이 공제시점
 - 전화를 통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자선단체에 지불하는 시점이 공제시점

- 자산을 기부할 경우 공제금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기준

- 미국 국세청은 용역가치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 및 자산의 사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의 무료법률서비스, 비영리단체 방송국의 작업 참여, 신문사의 신문 공란 제공 등도 국세청에서 공제를 불인정
 - 반면 자원봉사 활동에 수반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기부금공제가 인정
 - 자원봉사 활동에 수반하여 지출하는 여비나 교통비, 숙박비, 제복, 작업복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③ 기타

- 미국의 경우 종교분야가 기부받는 금액이 가장 큼
 - 2006년의 경우 기부받은 분야별 기부금액은 종교 968억달러(32.8%), 교육 410억달러(13.9%), Human service 296억달러(10.0%), 보건 202억달러(6.9%), 공공사회복지 214억달러(7.3%) 등

2. 일본¹²⁾

가. 개요

□ 일본의 세법상의 기부 개념

- 기부금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기타의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의 증여나 무상의 공여이다(일본 소득세법 37조 7항). 따라서 이는 통상의 의미에 있어서 기부금보다도 상당히 폭 넓은 관념
- 기부금이라 함은 금전 등의 자산의 증여 또는 경제적 이익의 무상공여를 말한다(7항). 여기에서 「무상」이라 함은 대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 등의 유입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하나의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법인이 매입처의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출자하여 모으는 경우, 출자액 중 환원액을 상회하는 금액,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그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의 차액, 자회사에 대한 내실이 따르지 아니하는 업무위탁 명목의 지출,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자에게 정상 대가를 초과하여 지출을 초과한 그 초과액, 채무의 면제를 초과하여 채무상당액,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그 시가상당액으로 양도액을 초과한 그 토지의 사용권의 시가상당액, 관련회사에 대한 매출할인, 신주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증자불입금 등이 판례상 기부금에 포함
- 또한 자산의 양도 또는 경제적 이익의 공여가 시가상당액보다도 낮은 대가로 행한 경우 그 차액 중 실질적인 증여 또는 무상의 공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의 금액에 포함된다(동 8항).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시장가치
 - 판례상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되는…」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보아 증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무상으로 자산이 양도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이 공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12)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기부금관련세제는 최근 지방세연구소에서 발간한 “기부방식별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 방안연구”, (2010. 2)의 내용과 이룸단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2009년 2월 3일), 대주회계법인,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2010. 자료를 인용 소개한 것임.

것이 광고선전비·건본품비·교제비·접대비·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는 기부금에서 제외(37조 7항 괄호 내)

- 예를 들면 법인이 그 특약점에 자기 제품의 광고선전을 위하여 이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는 그 시가 또는 시가와
의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보고 회계처리 함.

□ 일본의 기부금단체의 법인격 취득

- 일본의 경우는 공익단체의 법인격 취득과 세제 우대조치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부여하는 주무관청의 심사가 매우 엄격함
- 허가에 있어서는 사단이나 재단의 설립 후 영속성이 중시되며, 사단이라도 다액의 재산이나 다수의 회원이 요구됨
- 일본은 다양한 법인의 설립허용이나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비영리조직과 각 정당에서 비영리 조직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의 기부금단체의 세제 우대조치

- 일본은 세제의 우대에 관한 내용에 있어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은 공익법인의 보호육성의 입장에서 국세, 지방세에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인 법인세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공익법인이 지불을 받는 이자 등에 관해서도 원천징수 되지 않고 비과세 됨.
- 일본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이고 배분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생위원회에 의한 호별모금의 비중이 높고,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배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모금활동은 10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지며, 면세혜택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40%까지, 기업은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함.
- 이러한 일본의 기부금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매우 유사하며, 다만 세제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종류가 우리와 조금 다를 뿐임.

나. 일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¹³⁾

① 분류

□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종류

- 일본의 비영리단체의 종류는 현재 새로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과 NPO법인으로 나뉨.
- 세제혜택의 범위가 비영리법인보다 더욱 확대된 공익법인과 NPO법인보다 더욱 확대된 인정NPO법인으로 나뉘어져 있음.

□ 일본의 새로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의 특징

- 첫째, 법인설립으로 「준칙주의」를 채택하여 주식회사의 설립과 같은 원칙을 취하고 있음
 - 이것은 종래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주의에서 벗어나 법인설립에 관해서 행정의 관여가 일체 없는 결과가 되는데, 이 단계에서 설립되는 법인을 「일반 사단법인」 혹은 「일반 재단법인」이라고 함.
- 둘째, 제3자 기관이 공익성의 판단을 한다.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고 단지 「이익의 분배를 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하는 의미만을 갖음.
 - 공익성이 있는 법인인지 여부는 「공익인정 등 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으로부터 독립한 제삼자 기관의 의견에 따라 행정청이 결정
 - 「공익 인정등 위원회」는 7명의 민간 의원으로부터 구성
 - 여기서 인정된 법인은 「공익사단 법인」 「공익 재단법인」이 된다. 「공익성이 없다」라고 여겨진 법인 또는 공익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던 단체는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인 채로 존속
- 셋째, 공익 인정을 받은 법인은 행정부의 감독을 받음
 - 공익 인정을 받은 「공익 사단법인」, 「공익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은 필요에 따라서 운영 조직이나 사업 활동의 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13)金子 宏, 『租税法』(第14版), 弘文堂, 2009 참조

- 이에 반하여 공익 인정을 받지 않는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은 주식회사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감독을 받지 않음.

□ 일본의 NPO법인 특징

- 첫째, 법인설립에서는 「인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음.
 - 인증이란, 법률에 성립 요건이 모두 정해져 있어 신청이 법률의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관할청은 확인하는 것만으로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법상 인가(認可)와 같은 의미
- 둘째, 공익성의 판단을 마켓 원리에 맡기고 있음
 - NPO 법인은, ①불특정 다수의 것의 이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②법률에 열거된 17 분야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함.
 - 그래서 이러한 2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공익성이 있다」라고 하는 구조이므로 행정청이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하지 않음.
 -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NPO 법인이 활동했을 때 공익성의 판단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나 지원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
- 셋째, 행정의 사후 체크가 존재한다. NPO법인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위반하였다는 상당한 혐의가 있을 때 감독청은 조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점에서 일반 사단법인 등과 다르다. 종전의 재단·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은 감독청이 언제라도 조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개입의 정도가 약해진 것임.
- 따라서 기부금의 우대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 즉, 「일반 사단법인등」이 된 다음 공익법인으로 되는 방법과 NPO 법인이 된 다음 인정NPO 법인이 되는 방법이 있음.

② 과세상의 취급

- 첫째,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은 영리 법인과 같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
 - 회비, 기부금, 조성금 등에도 과세되며, 일부 예외가 인정됨.

- 둘째, NPO 법인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영리 기업과 경합하는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 됨.
- 셋째, 공익사단법인, 공익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에만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NPO 법인과 같지만, 간주기부금이 인정되고 기부자의 공제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간주기부금이란 수익사업으로부터 비수익사업으로의 자금의 이월액 중 일정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공익법인의 기부자의 공제범위는 통상의 경우와 별도로 동액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적용되어 최대 2배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함.
- 넷째, NPO 법인도 인정NPO 법인이 되면 과세상으로는 공익사단법인이나 공익 재단법인과 동일하게 되는데, 인정NPO법인은 국세청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며 ①넓게 일반으로부터 지지(기부)를 받고 있을 것, ②활동이나 조직 운영이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을 것, ③법인에 관한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다. 기부자에 대한 소득과세상 혜택과 공제의 범위¹⁴⁾

- 일본의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소득과세상 혜택을 주고 있음.
 - 소득과세상 혜택은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그리고 기부단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름.
- ① 개인기부의 경우
 - 개인기부자는 “특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 허용됨(소득세법 제78조).

14) 본 절은 서울시립대교의 박 훈 교수의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한 것으로서, 2010년도 최근 일본의 세법개정 사항을 포함 함.

- 어떠한 단체에 기부하는지에 따라 특정기부금인지 일반기부금인지 결정됨.
- 일반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특정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기부단체의 유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78조에 규정
- 특정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기부단체의 경우 그 한도는 동일하지만, 법인 기부자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가 차이가 있음.

□ 개인기부자는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나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1호),

- 채무대신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2호),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217조), 주무대신이 인정한 특정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이 되도록 지출한 금액(소득세법 제78조 제3항)은 특정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됨.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7조에 열거되어 있음. 독립행정법인(동조 1호), 개호노인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동조 1의2호),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일본사법지원센터, 일본사립학교진흥및공제사업단, 일본적십자사(동조 2호),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동조 3호), 학교법인(동조 4호), 사회복지법인(동조 5호), 갱생보호법인(동조 6호) 등이 이에 해당함.

□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

- 2009년까지 기부금 공제의 금액은 「Min(그 해에 지출한 특정 기부금의 합계액, 그 해의 총소득 금액 등의 40%상당액) - 5천엔」이며, 총소득금액의 계산은 복잡하지만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은 급여 수입-급여 소득 공제액이 됨.
- 예컨대 그 해에 인정 NPO 법인 등에 1만엔을 기부한 경우 1만엔 - 5천엔=5천엔이 공제 됨.
- 연간 급여 수입이 500만엔인 경우 급여소득공제액 154만엔을 공제하면 급여소득은 346만엔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150만엔을 기부했다면 346만

엔×40%=138만 4천엔 - 5천엔 = 137만 9천엔이 기부금 공제의 금액이 됨.

- 한 번에 고액의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범위와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함.

- 2010년부터 이러한 특정기부금 소득공제는 “기부금액에서 2천엔을 뺀 금액”을 소득공제로 허용함.

- 즉, **5천엔이 2010년 세법개정시 2천엔으로 변경**되어 소득공제가 더 허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특별기부금 소득공제는 당해 특별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 모두 위 2천엔을 뺀 금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존재함.

- 위 특별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 합계가 그해 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합계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40%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허용됨(소득세법 제78조 본문).

- 즉, “**기부금액(상한은 소득의 40%) - 2천엔**”이 특별기부금 소득공제 계산식이라 할 수 있음.

- 개인기부자에 대한 특별기부금 소득공제의 혜택은 소득세법에만 규정된 것은 아님

- 인정특정비영리법인(소위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법(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에서 위 특별기부금으로 보아 특별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은 과세상 혜택을 주고 있음.(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8의3).

-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에 대한 기부도 특별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허용하나, 해당 근거조문이 삭제되면서 경과조치로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지출된 것까지만 허용함. (구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8의2, 부칙 제55조).

-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일본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과세상 특례의 특징은 **소득공제(특별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8).

- 세액공제는 그 해 **정당등에 대한 기부금합계액(상한 총소득금액의 40%)에서 2천엔을 뺀 금액의 30%**를 정당등기부금특별공제액으로 함.

- 100엔 미만의 단수는 절사(切捨)함.

-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이외 특별기부금이 있는 경우 정당등에 대한 기부금과

다른 특별기부금을 합쳐 그 금액이 그 해 총소득금액의 40% 상당액을 넘는 경우에는 40% 상당액에서 특별기부금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합계액으로 함.

□ 일본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과세상 특례의 특징

-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개인기부의 경우에 2천엔 이하의 기부금에는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점,
- 사업소득자이든 근로소득자이든 소득과세상 동일한 소득공제방식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에도 전액 공제가 되지 않고 한도가 있다는 점,
- 기부금 소득공제의 유형은 특별기부금 소득공제라는 하나의 틀에서 소득의 40%한도 적용(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특례, 지정으로 나누어 100%, 50%(30%), 20%(종교단체 10%)한도 적용을 받음)을 일률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조세특별조치법상 소득세법 이외의 기부금 소득공제는 허용되나 특별기부금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음),
-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② 법인기부의 경우

□ 법인의 경우 기부금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의 원인으로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판정이 어려운 문제 임.

- 만약 이것이 법인의 사업에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는 이익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얼마만큼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얼마만큼이 이익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행정적 편의와 함께 공평의 유지의 관점에서 통일적인 손금산입한도액을 두어 기부금 중 그 범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서 손

금산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일본 법인세법 37조 1항).

- 또한 연결법인이 동일그룹 내의 다른 연결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성질상 손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동 2항).

□ 공익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의 2 종류의 기부금은 그것이 비용의 성질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됨(37조 3항. 이러한 기부금은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적용되는 기부금에서 제외 됨).

-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다(동 1호). 다만, 그 기부를 한 자가 그 기부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를 전속적으로 이용하는 때, 기타 특별한 이익이 그 기부를 한 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됨.

- 두 번째는 이른바 지정기부금으로 공익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① 널리 일반인에게 모집되는 것,

②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충당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2가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재무대신이 지정한 것(동 2호).

- 세 번째는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이러한 법인의 주된 목적인 업무에 관련한 것 및 인정비영리활동법인(이른바 인정NPO법인)¹⁵⁾에 대한 기부금으로 그 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에 관련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손금산입한도액과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손금에 산입됨(37조 4항, 66조의11의2 제1항).

- 또한 특정공익신탁(공익신탁으로 신탁이 종료하는 때에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은 기부금으로 보아 위의 세 조치의 적용대상으로 됨(37조 6항).

□ 공익법인 등이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그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하

15) 66조의 11의 2 제2항 참조. 인정의 요건·절차 등은 령 39조의 23에 상세하게 규정

여 지출한 금액은 그 수익사업에 관한 기부금으로 봄(37조 5항).

- 공익법인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수익사업의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나(4조 1항·7항),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그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을 한 경우에 동일 인격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여 공익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임.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은 확정신고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기부금의 명세서를 첨부하고 또한 필요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9항 또는 10항 참조).

□ 법인기부에 대한 유형

-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세 기부금세제는 특정기부금으로서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예외 있음)가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일반기부금으로 칭함)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눔.
- 이에 반해 법인의 기부는 개인기부의 특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단체의 경우가 크게 두가지 그룹으로 분류
- 따라서 법인기부에 대한 법인세 기부금세제는
 -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
 - 한도적용 있는 기부금
 - 일반회사의 기부금한도 적용을 받는 기부금으로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음.

□ 공제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재무대신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산입 되는 기부금에 해당 함(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법인세법 제37조 제4항)에 대한 기부금은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합계액과 [자본금등의 액 × 당기월수/12 ×

$2.5/1,000 + \text{소득금액} \times 5/100^{16})] \times 1/2$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함.

- 위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일반 기부금액에 포함 됨.
 - 주무대신이 인정한 특정공익신탁의 신탁재산이 되도록 지출한 금액(법인세법 제37조 제6항)도 위 기부금에 포함되어 손금산입액을 계산 함.
 - 인정특정비영리법인(소위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11의2),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구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12, 부칙 제65조)도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한도적용을 받는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동일하게 취급 됨.
 - 개인기부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조세특별조치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 법인의 손금산입한도 적용을 받게 됨.
 - 법인기부가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text{자본금등의액} \times \text{당기월수}/12 \times 2.5/1,000 + \text{소득금액} \times 2.5/100] \times 1/2$ 를 손금한도액으로 함(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일반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이라고 법령에서 표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인기부의 경우에 전액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데 반해(개인기부의 경우에는 전액소득공제 허용), 일본의 경우 법인기부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는 전액손금산입이 허용됨.(개인기부의 경우에는 40% 한도 적용).

마. 한국과 일본의 비교사례

-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음.
- 일본 미야자키현(宮崎縣)에 최근 발생한 구제역피해와 관련한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¹⁷⁾

16) 이는 후술하는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기부금의 경우는 5/100이 아니라 2.5/100이다.

17) <http://www.nta.go.jp/sonota/sonota/osirase/data/h22/kouteieki/02.htm> 참조

- 개인기부의 경우에는 특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40% 한도적용을 받는 소득공제대상이 되고, 법인기부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산입대상이 됨.
-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받거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전액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것임. 법인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전액이 아닌 소득금액의 50% 한도 적용을 받음.

바. 기부방식별 세제 혜택

- 일본의 경우 부동산 기부, 주식 기부, 용역 기부 등의 기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유산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생략 함.

① 부동산 기부

- 현금기부와 같은 기부금 공제
 -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현금기부와 원칙적으로 같음. 따라서 현금기부에서와 같이 기부금공제의 대상
 - 그 범위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종류에 따라 결정 됨. 예컨대 기부를 받은 NPO 법인은 부동산기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과세되지 않음.

□ 간주양도

-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주식 등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대금에서 취득비용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매각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 취득비용이 불분명한 경우 매각가액의 5%를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 다만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간주양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간주양도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NPO법인에 그것을 기부하는 경우 그것을 시가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기부할 한 시점에서 과세를 하는 제도

- 간주양도는 기부할 한 경우 이외에도 저가양도라고 하여 시가의 2분의 1 미만의 금액으로 양도가 된 경우에도 적용 됨.

- 예를 들면, 시가 2천만엔 부동산을 선조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NPO 법인에 기부한다면 기부할 한 사람은 2천만엔 - 2천만엔×5% = 1900만엔(취득비용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 양도 비용은 들지 않았다고 가정)에 대해서 과세가 됨.

- 이 경우 세율은 토지,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20%가 되며 따라서 1900만엔 × 20% = 380만엔이 과세됨.

- 이와 같이 기부할 하고서도 간주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지는 것은 「조세 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것임.

- 예컨대, A가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1000만엔 가격이 상승한 경우로서 A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그 회사의 이월손실이 1000만엔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A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기부할 하고, 간주 양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1000만엔이 포함된 평가이익에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되며, 회사도 그 1000만엔의 기부를 받았음에도 이월결손금 1000만엔과 상쇄되어 법인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됨.

- 이처럼 간주 양도의 규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법인을 이용해 과세회피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간주양도의 규정을 두게 된 것임.

- 이 간주양도의 규정은 기부할 받은 법인이 NPO법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인정 NPO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됨.

- 그러나 공익사단·재단법인에 기부할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이가 발생

- 그래서 인정NPO법인과 공익법인과 이러한 불균등한 취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음.

② 주식 기부

□ 주식기부의 경우에도 부동산기부와 같은 간주양도의 규정이 적용 됨.

□ 주식기부에 대한 일본세제

- 일본의 경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경우처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시 현금의 경우와 달리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상속세법상 두고 있지는 않음
 - 동족회사 등을 경유하여 기부자와 특수관계자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처분 할 수 있는 조문은 존재함(상속세법 제64조 제1항).
- 이러한 일본 상속세법 제64조의 동족회사 등의 행위 및 계산부인등 규정이 공익법인이 사실상 지주회사화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이 조항은 다양한 회사를 이용한 자본거래로 증여자나 수증자간 상장차익 및 합병차익의 이전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 및 보유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차원에서 제한은 존재하지만 세제상 직접적 제한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운영기준」 및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기준운영지침」에 따라 공개시장을 통하는 등 포트폴리오 운영인 것이 분명한 재산관리운영인 경우,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법인의 주식보유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¹⁸⁾
- 주식보유가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라도 한 영리기업의 전주식의 1/2을 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한 영리기업의 전주식의 20%를 보유한 경우에는 매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해당 영리기업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일정 한도 이상의 기부받은 주식 자체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고 보유단계에서 보유제한이 존재하고 있음.

③ 용역 기부

- 한국의 경우 유상 자원봉사의 세무상 취급에 대해 논의가 적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유상 자원봉사의 세무상 취급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18) 해당 규정전문에 대해서는, <http://www.gyokaku.go.jp/jimukyoku/koueki-bappon/yushiki/dai6/6siryou-s4.pdf>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유상 자원봉사란 일반적인 급여만큼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약간의 사례적인 금전을 건네주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서비스의 이용자는 완전한 무상이라면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고, 자원봉사자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NPO측도 자금력이 없어 통상의 급료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출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상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논의되는 것임.
- 이러한 유상자원봉사에 대한 보수는 세법상 대부분 급여의 성질을 갖게 되지만 일시적인 이벤트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간급 등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일용직 노무자와 같은 취급을 하게 됨.
- 등록제의 자원봉사 등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일용노무자와 같은 취급을 하기가 어려움.

□ 용역기부에 대한 일본세제

-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세제상 직접적으로 기부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용역기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용역기부의 경제적 가치만큼 소득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기부금세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게 됨.
 - 즉 법인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의 “무상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 용역제공시 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와 동일한 금액을 동법 제37조 제6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기부금으로 계산하게 됨.
- 다만 개인이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모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교통비, 활동시 제복에 드는 비용 등은 기부금으로 보는 입법적인 논의는 있었음.¹⁹⁾ 현재의 경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세의 손금산입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명문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세제는 일본 현행 세법상 찾기 어려움.

19) <http://www.kohokyo.or.jp/kohokyo-weblog/non-profit/image/ikensho050704.pdf> 참조

-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이 되고 있음.
 - 시민활동단체지원제도(소위 1%지원제도)가 그 예 임.²⁰⁾ 즉, 개인시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지정한 단체를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들인 개인시민세의 1%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도는 아님.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④ 해외기부에 대한 일본세제

- 일본의 경우 개인기부이든 법인기부이든 기부금세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별조치법상 기부단체에 해당하여야 함.
- 해외기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법상 규정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위 법령상 기부단체가 공익활동의 하나로 해외공익활동을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해외기부에 대한 기부금세제가 주어질 수는 있음.
 - 해외기부단체에 직접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세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해외기부단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별조치법에 열거된 기부단체여야 함.
 - 일본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임산부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가족계획국제협력재단의 경우 여기에 기부를 하는 자에 대해 기부세제의 혜택이 주어짐
 - 그런데 이는 공익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공익활동을 하고 그러한 공익활동을 위 재단이 특정공익증진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세제상 혜택임.²¹⁾
 - 일본에 소재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20) http://www.genki365.com/ichikawa/ichikawa_volunteer/nouzei.htm 에는 이러한 제도를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 市川市の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21) 이 재단에 대한 기부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http://www.joicfp.or.jp/jp/donation/tax_incentives 참조.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기부금세제혜택을 못 받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가 있음.

- 이는 국내기부이나 해외기부이나가 기부금세제 혜택을 받는지 여부에 따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인정한 기부단체인지가 기부금세제 혜택을 결정짓는 것임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음.
- 일본에 소재하는 여러 중화학교와 조선학교에 대해, 지정기부금 공제대상(통상의 학교법인의 경우 적용됨, 동경한국학교, 동경독일인학원의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공제대상으로 허용됨)에도 해당하지 않고 특정공익증진법인(국제평가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구미계 학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6년 3월 경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음.²²⁾
- 이들 중화학교와 조선학교에 대한 기부에 대한 기부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문부성 및 세제당국의 법령 해석상 이견 및 여러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음
- 다만 이 예는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라도 동일하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한 예라 할 수 있음.

- 법인세법상 비영리단체(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등)에 대한 지원제도 요약
 - 수익사업의 이자수입만 과세
 - 특혜세율 22%(2011년 3월31일까지 연소득이 8백만엔 미만인 경우에는 18%)
 - 일반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익사업을 위해 이관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로 간주하며 이 때 공제가능액은 경상이익의 20% 한도
 - 수익사업 등에 대한 장부 기장 의무

22)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

<http://www42.tok2.com/home/minzokukyoikunomirai/material14.html> 참조.

□ 일본의 기부금별 기부자(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요약

[표 IV-2] 일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부금의 종류	공제 한도액	
	법인(법인세)	개인(소득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소득공제액 = MIN(①,②) - JPY2,000 ① 연간 기부금 합계액 ②(기부금차감전)소득금액의 40%
지정기부금 (특정적십자기부금,공동모금회 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적십자회비 및 기타 적십자기부금)	$(\text{자본 등의 금액} \times \text{사업연도월수} / 12 \times 0.25\% + \text{소득금액} \times 5\%) \times 1/2$	즉, 연중 지출한 기부금 합계액(소득의 40% 상당액 한도)에서 2천엔 ²³⁾ 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공제
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text{자본 등의 금액} \times \text{사업연도월수} / 12 \times 0.25\% + \text{소득금액} \times 2.5\%) \times 1/2$	공제 없음

자료: 대주회계법인,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2010. 6. 14쪽

3. 영국²⁴⁾

가. 개요

- 영국법제하에서는 공익자선의 목적(Charitable purpose) 을 갖는 조직은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익단체(Charity)가 될 수 있음.

23) 2009년도까지는 5천엔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2천엔으로 변경.

24) 주요국의 기부금 지원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9,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신·박훈, 2009. 2.,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대주회계법인, 2010. 6..

- 그러나 공인된 공익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법(Charities Act of 1993)에 의해 설치된 공익단체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함.
-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익단체위원회에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행해 짐.
- 모든 공익단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 ①공익단체법에 따른 영속적 기탁재산을 가진 공익단체
 - ②토지를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공익단체
 - ③총수입이 연간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공익단체는 등록의무 있음

나.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 영국은 공익단체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그 범위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널리 규정되어 있음.
 -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자격을 승인 받는 경우 그 본래 사업 및 주로 당해 공익단체의 수익자가 수행하는 본래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됨.
 - 그러나 공익단체가 행하는 비관련사업(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됨.
 - 그리하여 대부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그로부터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를 취함.

- 영국에서 기부금 소득공제는 HM Revenue and Customs(이하 'HMRC')에서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만 가능함.
 - 지정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선단체가 EU 자선단체 규제기관들(the Charity Commission, the 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 and the Charity Commission for Northern Ireland, in the UK 등) 또는 HMRC 중 하나 이상에 등록되어야만 함.
 - 또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Gift Aid Scheme을 적용 받는 기부를 하여야 함.

□ 공익단체의 투명성

- 영국의 공익단체들은 공익단체위원회의 감사부나 조사부에 의한 조사, 시민의 고발, 신문보도 등으로 인해 공익단체제도의 남용이 판명된 때 등록을 말소
- 특히 일반 시민으로부터 관리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되어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음.
 - 위원회의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자의 해임 및 신규임명, 은행구좌의 동결, 자금운용의 금지, 관리자의 단체재산에 대한 업무수행금지,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실회복요구, 형사사건 발생 시 경찰에 신고 등의 조치가 내려 짐.
 - 심각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단체에 대해 경고를 내리고 그 후의 운영상태를 계속 관찰 함.

다. 개인의 경우

- 기부금액 이상의 소득세(또는 자본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Gift Aid Schem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부가 가능
 - 이 경우 자선단체는 HMRC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의 28%상당액을 지원(gift aid)받을 수 있음(2011년 4월6일 이후부터는 25%).
 - 만약 개인 기부자가 고세율 납세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과 고세율의 차이(기부금액의 25%)만큼 기부자가 HMRC로부터 세금신고서를 통해 추가로 환급(또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개인의 경우 상장주식을 포함하는 특정 주식 및 토지의 기부시 Gift Aid Scheme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자선단체 및 개인의 세금혜택은 현금기부와 동일하며 기부물품은 시장가치로 산정

라. 법인의 경우

- 법인의 특정한 기부나 특정 주식, 토지, 상품 등을 Gift Aid Scheme을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외한 추가 환급은 청구할 수 없음.
- 공제 대상 기부금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당해 기부를 대가로 중요한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 함.

[표 IV-3] 영국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부금의 종류	공제 한도	
	법 인	개 인
HMRC에서 지정한 단체에 대한 Gift Aid Scheme을 적용 받는 기부 (영국 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주2) 포함)	과세소득에서 100% 공제	기부자가 기부금액 이상으로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① 기부수령단체: 기부금액의 28% ^(주1) 를 HMRC로부터 지원 ② 고세율 납세자 : 기부금액의 25% 환급가능

(주1) 2011년 4월6일 이후부터는 25%

(주2) Charities Aid Foundation(CAF), United Way and United Trust 등

자료: 대주회계법인,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2010. 6. 22-23쪽

4. 호주²⁵⁾

가. 개요

□ 호주의 기부 현황

- 호주는 문화 및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기부를 선호하고 기업의 2/3가 기부를 하고 있음
- 기업들은 주로 현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현물, 서비스, 현금의 비중으로 기부하고 있음.
- 호주는 기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의 약 87%가 기부를 하고

25) 김매든박사(퀸즈랜드 공과대, 호주기부 및 비영리 연구센터), 2008.12, 제8회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 Giving Korea 2008, “호주의 기부문화” PPT자료, 및 대주회계법인,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2010. 6. 29-33 쪽 내용 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의 기부 동향

- 기업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기부를 이용 함.
- 명성 유지, 브랜드 구축, 유능한 인재 유치, 도덕성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고려 함.
- '파트너십'과 다차원적인 지원이 증가 함.
- 직원 자원봉사와 매칭 기부 프로그램이 증가 함.
- 2004년에 전체 성인의 약 41%가 참여

나. 세제지원

□ 조세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기부 인센티브를 제공함.

- 소득공제 등은 호주 비영리단체에 기부되는 돈 4달러 중 1달러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신청된
 - 그리고, 고소득자는 세금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1년도 호주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 및 개인 기부를 보다 장려하기 위하여 PPF라고 불리는 민간 및 기업 재단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5년간 기부평균이 \$5,000이상의 부동산 기부에 대한 감면, \$5,000 이하의 주식 기부에 대한 감면, 소액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예. 기금마련 만찬), (월급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사내 기부에 대한 감면, 자연보호구역 및 문화적 기부 프로그램(Cultural Gifts Program)에 대한 기부가 있으며, 문화적 기부 프로그램은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5년간 \$230백만)이 있음.

□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세금공제가능 기부금 수령단체(Deductible Gift Recipient, 이하 'DGR')로 등록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기부자의 소득에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가능 함.

- 기부금은 AU \$2이상일 것
- 기부는 현금 또는 특정 자산일 것

- 기부금 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을 한도로 함
 - 즉, 공제가능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과세소득을 한도로 100%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개인 및 법인이 동일 함.

- 자선단체(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등) 에 대한 지원제도: United Way Australia Ltd 및 호주 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제도
 - United Way Australia Ltd는 자선단체(Charitable institution)로 등록되어 있으나 세금공제가능 기부수령단체(DGR)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제지원
 - 소비세 감면
 - FBT 비과세 (*참고: FBT: Fringe Benefits Tax)
 - 소득세 비과세
 - 호주 적십자사는 현재 정부인증 공공자선단체(endorsed public benevolent institution, PBI)와 세금공제가능 기부수령단체(DGR)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을 받고 있음.
 - 소비세 감면
 - FBT비과세
 - 소득세 비과세

- 자선단체의 비과세 요건
 - 인증된 자선단체(endorsed charitable entity)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영리목적이 아닐 것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등)
 - 자선활동의 수행이 주요목적일 것
 - 그러한 자선활동이 주로 호주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단체가 속한 국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을 것
 - 또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자가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선단체는 세금 공제 가능 기부수령단체(DGR)로 등록되어야 한다.

- 자선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 소득세(Income Tax)

- 모든 소득, 증여, 기부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수익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자산의 처분을 통한 자본이익의 세금 면제
- 소비세(Good & Service Tax, GST)
 - 세금공제가능 기부수령단체(DGR)에 대한 기부에 대한 소비세 비과세
 - 자선단체의 의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이 시장 가치의 50%이하로 제공되거나 취득원가의 75%이하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의 표준세율 적용
 - Fringe Benefits Tax(FBT)
 - 자선단체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임금 외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 종업원당 AU\$30,000 한도로 공제되거나 세액의 48%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공공자선단체(public benevolent entity)는 종업원당 AU\$30,000 한도로 공제
 - 자선단체(charitable entity)는 종업원당 AU\$30,000를 한도로 세액의 48%를 환급
 - 주정부 세금
 - 지불 급여세(Payroll Tax) 및 인지세(Stamp Duty Tax)의 면제 : 자선단체는 지방정부의 지불급여세 및 인지세가 면제
 - 토지세(Land Tax)의 면제 : 자선단체의 토지가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에 대한 토지세가 면제
 - 차량 등록세(Motor vehicle registration)의 면제 :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차량 등록세 면제
 - 지방정부 세금
 - 자선단체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선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관련 세금이 감면됨.

※ Fringe Benefits Tax(FBT)

- FBT: Fringe Benefits Tax. Fringe Benefits는 (고용주가 임금 외에 주는)부가혜택으로 FBT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부가혜택을 제공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임.

[표 IV-4] 호주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부금의 종류	공제한도	
	법 인	개 인
국세청에 세금공제가능 기부금 수령단체(DGR)로 등록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 ^(주1) (호주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주2) 포함)	과세소득 한도로 100% 공제	좌 동

자료: 대주회계법인,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2010. 6. 29쪽

(주1)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부금

- 기부금은 AU \$2이상일 것
- 기부는 현금 또는 특정 자산일 것
- 기부금 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을 한도로 함

(주2) United Way Australia 등

5. 독일²⁶⁾

가. 개요

□ 독일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본 방식

- 독일 세법에 의하면 공익, 자선, 종교 등의 목적만을 위해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는 세금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독일의 기부금 세제지원 방식(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기부금 수준별 차등지원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임.
- 소득공제의 한도는 소득, 매출액, 또는 급여지급액의 일정비율로 설정됨.

26) ' 주요국의 기부금 지원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9,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신·박훈, 2009. 2.,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대주회계법인, 2010. 6..

- 차등지원은 별로 없으나 예외적으로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의 50%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강력하게 지원함(한도 존재).

□ 개인의 기부

- 개인의 기부는 현금 기부금, 기부물품, 회비(스포츠, 각 기부자의 여가를 위한 문화활동, 독일세법(Abgabenordnung) article52 paragraph1 number23에 열거하는 기타활동을 위한 모금관련 회비는 제외)를 포함 함.
- 기부금 대상 단체는 공법상 내국법인, 정부기관 또는 EU 및 EU회원국에서 인정된 비영리단체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세금 특혜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함.
- 기부금은 비경상비용으로 간주되어 총소득의 20% 또는 매출액, 급여, 지불임금의 합계액의 0.4%를 한도로 공제하고 만약 기부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이월공제가 가능 함.
- 또한, 개인은 독일 국세청(German Tax Office)으로부터 비영리단체로 인정된 재단의 설립에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부금은 EUR1,000,000을 한도로 세금 특혜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재단 설립 기부금의 세금 특혜는 10년에 1회에 한 함.

□ 법인의 기부

- 법인도 기부금을 개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재단에 대한 기부는 할 수 없음.

[표 IV-5] 호주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구분	기부의 종류	공제액
개인	기부금, 기부물품, 특정 회비	총소득의 20% 또는 매출액, 급여, 지불임금의 합계액의 0.4%를 한도로 한 기부 총액
	재단 설립 기부금	EUR1,000,000을 한도로 추가 공제
법인	기부금, 기부물품, 특정 회비	총소득의 20% 또는 매출액, 급여, 지불임금의 합계액의 0.4%를 한도로 한 기부총액

자료: 대주회계법인,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2010. 6. 37-38쪽

나. 독일의 기부금 관련 세제 규정

① 소득세법

- 공공복리,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의 업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공법상의 국내 법인체, 국내 사무소, 정치, 사회단체, 재단 등에 제공한 기부금(회원의 회비 포함)은 총 소득의 20%까지, 또는 총매출과 과세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합계액의 0.4%까지 특별비용으로 공제가능 함(소득세법 제10b조 1항 1절).

- 스포츠협회, 문화활동동호회, 지역문화연구회, 지역문화지킴이회, 동물애호가회 등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소득세법 제10b조 1항 2절).
-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 또는 회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가능함(소득세법 제10b조 1항 3절).
 -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업개혁법에 따라 과세연도 2007년부터 소급하여 공법상의 재단기금 또는 사법상의 재단 가운데 법인세법 5조 1항 9호에 의거 법인세납부의무면제단체로 지정된 재단기금에 제공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위의 공제한도 외에 추가적으로 총 1백만 유로까지 공제가능토록 하였음.
 - 이 특별공제액은 10년에 단 한 번 적용이 가능함(소득세법 제10b조 1a항).
- 그러나 기부금 또는 회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기부금 또는 회비를 받는 단체의 성격이 조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라야 함.
- 조세기본법 제52조에서 54조의 규정 따르면 공익단체란 물질적, 정신적, 윤리적 영역에서 공중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써 제공자와 수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수혜자가 공간적으로나 업무상 특정 소규모집단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수령단체가 법인세납부의무면제단체임을 명시한 정식 기부금 양식을 발행하여야하며, 고의적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이 잘못된 영수증임이 밝혀지면 기부금영수증 발행단체가 손실세금에 대해

여 책임을 져야함.

- 손실세금액수는 제공된 기부금액의 30%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10b조 4항). 200유로까지의 기부금인 경우에는 정식기부금 영수증이 없이 단순히 수령단체가 명시된 송금확인서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2항 1절).

□ 정당에 대한 기부금

-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우선 소득세법 제34g조에 의하여 기부금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음.
- 이때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최대한도는 1,650 유로이며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3,300유로임. 따라서 소득세액은 최대한 825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 1,650 유로) 줄어 듬.
- 이 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신 소득세법 제10b조 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650 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 3,300유로)를 한도로 기부금으로 인정받음.

② 법인세법

- 여기서 열거된 분야(조세기본법 제52조-54조) 중에서 조세기본법 제52조 2항 제21, 22, 23호에 해당하는 체육회,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활동단체, 향토문화재보호 및 향토사연구회, 동물보호협회, 주말농장동호회, 카니발, 사육제 등 전통 행사 준비회, 재향군인협회, 아마추어무선통신회, 모형비행기동호회 등 단체와 관련하여 기부금은 인정하되 단체회비는 인정하지 않음(법인세법 제9조 1항 2호 2절).
-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연도에 그 년도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될 수 있음.
- 이 기부금 관련 조항은 소득세법 10b조의 기본구조와 동일함.
-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20%이나 개인의 경우 대신에 총소득금액의 20% 까지 허용되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매출과 지급임금의 합이 0.4%라는 한계는 동일함.

-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요한 차이 하나는 소득세에서는 개인에게 정당에 대한 기부금을 소득세법 제10b조 2항에서 매년 1650 유로까지 허용하며 부부에게는 3300 유로 까지 허용하는 것에 비하여, 법인세에서는 법인에게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다. 비영리단체(공동모금회 및 적십자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 법인세, 거래세(Trade tax) 및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면제
 - 세금 특혜를 받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세 및 거래세(지방세)가 면제 됨(다만, 고유목적의 아닌 수익활동에 대해서는 과세). 또한 과세되는 수익활동이 아닌 부문에서 발행하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도 면제 됨.
- 부가가치세(VAT) 경감
 - 독일 부가가치세법상 기타용역 및 과세 수익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로 경감된다(독일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9%).
- 재산세(Real estate tax) 및 자본거래세(Capital transfer tax) 면제
 - 만약 비영리단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세금 특혜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면 재산세가 면제되며, 비영리단체가 기부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본거래세가 면제.
-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타지원
 -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재정지원은 없고 EU, 연방 및 주정부는 특별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
 -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를 들면, 2008년에 독일 적십자사는 EU,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아시아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에 기부금을 지원받음.
 - 독일에는 자선우표(Wohlfahrtsmarken)라는 특별우표는 발행하는 협회가 있어 여기서 발행하는 우표에는 EUR0.2~0.55정도의 금액이 추가되며, 이러한 추가

판매금액은 적십자사, 종교단체, 기타 자선단체 등 비영리기관에 배분.

□ 벌과금의 일부 지원

- 법원 또는 검찰은 범법자들에게 벌과금을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금액의 일부를 적십자사에서 지원받고 있음
- 비영리단체는 법원 또는 검찰에 등록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검찰은 재량에 따라 벌과금을 지급받을 단체를 결정.

라.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 비영리단체는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 기부자는 EUR200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공제받을 수 없게 됨.

6. 기타 국가의 경우

가. 프랑스²⁷⁾

□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 기부자가 개인의 경우 기부금액의 66%를 세액공제(소득금액의 20%까지) 해줌
- 그리고 '저소득계층을 위한 음식 및 주택제공' 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기부하는 개인의 경우 부가적인 세제혜택은 479프랑까지 기부금액의 75% 세액공제를 해줌.
- 한편 기부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60%를 세액공제(매출액의 0.5%까지) 해줌.

27)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시리즈1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2009. 02. 76쪽.

나. 캐나다²⁸⁾

□ 개인의 경우

- 기부자가 개인의 경우 기부금액의 15% ~ 29% 세금환급(소득금액의 75%까지)을 해줌.
- 부가적인 세제혜택
 - ① '등록된 정당정치단체'에게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1275달러까지 기부금액의 33.3% - 75% 세액공제를 해주며,
 - ② '문화재 기부 또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대지를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100% 세액공제를 해줌
 - ③ 한시적으로 (2006/12/04부터 2011/01/05까지) 동남아시아의 재해복구지원 활동을 하는 27개 지정봉사단체에게 '현금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100%에 상당한 정부보조금(matching grant)을 단체에 제공' 함.

□ 기업(법인)인의 경우

- 기부자가 기업인 경우 기본적인 세제혜택은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소득의 75%까지)를 해줌.
- 부가적 세제혜택은;
 - ① 기업이 '문화재 기부 또는 환경적으로 중요한 대지를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해줌.
 - ② 또한 한시적으로 (2006/12/04부터 2011/01/05까지) 동남아시아의 재해복구지원 활동을 하는 27개 지정봉사단체에게 '현금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100%에 상당한 정부보조금(matching grant)을 단체에 제공' 함.

7. 시사점

□ 조세지원이 되는 분야

28)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시리즈1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자료집, 2009. 02. 74쪽.

- 종교·교육·보건·복지·예술·문화·환경·동물보호 등의 형태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음

□ 조세지원 방식

-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방식은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의 방법이나 세액공제방식을 채택
- 소득공제 지원방식 :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영국, 대만 등
- 세액공제 방식: 프랑스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한도로 정하고 있음)

□ 법인기부금

- 법인기부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의 5%~20%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 우리나라의 일반 비영리법인 대상 지정기부금은 외국보다 낮은 수준

□ 개인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소득공제를 받는 나라의 경우 50%이내의 수준에서 공제를 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100%, 특례기부금 50%,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2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비용인정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자에게는 일정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는 조세효과를 고려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서도 조세 효과를 고려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예컨대 일본의 경우 ①소량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자선단체는 세제혜택을 강조하기보다는 공익성과 신용을 강조하고, ②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자선단체는 인정 NPO 법인이 신용도가 높다는 점과 세제상의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며, ③대규모의 기부를 목표로 하는 자선단체는 세제상의 메리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부자에게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 필요

[표 IV-6] 주요국의 개인·법인기부금 세제지원 요약 표

구분	미 국		일 본		영 국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개 인	공익성이 강한 단체(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조정 총 수입액의 50%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소득공제액 = MIN(①,②) - JPY5,000 ①연간기부금 합계액 ②(기부금 차감 전)소득금액의 40%	HMRC지정 단체에 대한 Gift Aid Scheme 적용 받는 기부(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기부자가 기부금액 이상 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①기부수령단체: 기부금액의 28%를 HMRC로부터 지원 ②고세율납세자: 기부금액의 25% 환급가능
			지정기부금(특정 적십자기부금, 공동모금회 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적십자회비 및 기타 적십자기부금)					
	인정 NPO					
기타공익단체(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조정 총 수입액의 50%	일반기부금	공제없음			
법 인	공익성이 강한 단체(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조정 과 세 소득의 50%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전액 손금 산입	HMRC지정 단체에 대한 Gift Aid Scheme 적용 받는 기부(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100%
			지정기부금(특정 적십자기부금, 공동모금회 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적십자회비 및 기타 적십자기부금)		(자본 등 금액 × 사업연도월수/12 × 0.25% + 소득금액 × 5%) × 1/2			
	인정 NPO					
기타공익단체(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일반기부금	(자본 등 금액 × 사업연도월수/12 × 0.25% + 소득금액 × 2.5%) × 1/2			

[표 IV-6] 주요국의 개인·법인기부금 세제지원 요약 표 - 계속

구분	호주		독일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개 인	공제가능 기부금 수령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과세소득 한도 100% 공제	공법상 내국법인 또는 정부기관 등에서 인정된 비영리단체 (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Max(①,②) ①총소득 × 20% ②(매출액+급여+지불임금) × 0.4%
			재단 설립 기부금	EUR 1,000,000 한도로 추가 공제
법 인	공제가능 기부금 수령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과세소득 한도 100% 공제	공법상 내국법인 또는 정부기관 등에서 인정된 비영리단체 (적십자사 및 공동모금회)	Max(①,②) ①총소득 × 20% ②(매출액+급여+지불임금) × 0.4%
			재단 설립 기부금	공제 없음

자료: 대주회계법인,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연구용역』 보고서, 2010. 6. 45쪽

V. 주요 쟁점

1. 기부금 지원 방식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음
 - 현행 세법에서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기부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간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첫번째 논점은 ‘기부는 필수적 비용인가 바람직한 활동인가?’ 하는 점임
 - 세법상 기부금을 소득공제하는 것은 기부금이 필요경비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기 때문임
 -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기부자의 필수적 비용이라는 의미
 - 실제로 조합비 및 회비는 그 성격이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절
 - 또한, 십일조와 같은 종교상 규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는 필요경비적 성격을 보유
 - 그러나 거의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도 고액의 기부를 하는 사람,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 전혀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 등 편차가 심하므로 모든 기부 행위를 필수적 활동으로 보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만약 기부행위가 필수적 활동이 아닌 바람직한 활동(merit goods)이라면 기부행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 가능
 - 그러나, 기부행위가 바람직한 활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방안이 지원책으로 보다 합리적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다음으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 소득공제방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역진성을 보유
 - 즉,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 기부자는 1원의 기부금에 대해 실제로

- 0.65원을 부담하는 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 기부자는 1원을 부담
- 또한, 소득공제방식은 세율구간이 높은 개인, 즉 고소득자에 유리한 방식
 - 아래 표에 따르면 동일한 기부금액 10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는 20만원
 - 반면 소득공제는 세율구간이 8%인 경우에는 8만원의 세금혜택이 있는 반면, 세율구간이 35%인 경우에는 35만원의 세금혜택이 발생

[표 V-1] 소득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 20% 기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0	0	1,000	1,000	10,000	10,000
세금	0	0	80	80	2,186	2,186
기부금	100	100	100	100	100	100
기부후 세금	0	0	72	60	2,151	2,166
감면 규모	0	0	8	20	35	20
공제율	0	0	0.08	0.2	0.35	0.2

-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도 세금 부담이 없는 납세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줄 수 없고, 세금 부담이 큰 납세자는 공제 한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 결국 불형평성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시 불가피한 것으로서 형평성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마지막으로 지원방식이 기부 취지와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것임
-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낸 기부금을 국가가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당 기부금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사실상 편법적인 예산 지원 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이 기부금 지원방안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현행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임

- 조세지원 방식의 변경은 세제의 너무 큰 변화인 반면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다만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한다면 세제의 단순화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

2. 조세지원 강도 및 단체 분류

가. 이론의 시사점

- II장에서 살펴본 이론 모형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의 강도는 외부효과에 의존
 - 다시 말하면, 외부효과가 클수록 조세지원의 강도가 강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낮음
- 경제학에서 외부효과가 가장 강력한 분야는 순수공공재
 - 이러한 순수공공재에 해당하는 분야는 국방이나 외교 등
 - 순수한 공공재는 아니지만 외부효과가 큰 분야는 도로, 철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 공공 교육, 공공 의료, 공공 연구개발 등도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상태
 - 반면에 자신이 속해 있거나 관련이 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는 외부효과도 있지만 자신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클 것
- 자신의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분야는 종교분야
 -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종교 분야에 대한 기부의 규모가 가장 큼
 - 헌금하는 이유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49%), 감사의 표현(31%), 교인으로서 의무(7.4%), 선교와 봉사(6.1%) 순²⁹⁾
 - 헌금의 용처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회봉사와 구제(26%), 예배 및 교육활동(21.1%), 기타 전도사업의 순

29) 이상신·박훈(2002)에 있는 바른교회 아카데미 설문조사 결과

□ 또한 이상신·박훈(2002)에서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 ① 종교단체인 경우와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로 분리할 필요가 있고
- ② 기부금의 용처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장 높게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기부세제가 필요하고
- ③ 기부를 받는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 현행 기부금 제도는 한도를 기준으로 차별

-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특례기부금은 한도가 소득의 50%, 지정 기부금은 한도가 20%, 종교단체는 한도가 10%
- 기부자의 경우는 한도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모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한도를 초과한 대규모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는 상태
 - 다만,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
- 반면 기부를 받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부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효과가 발생

□ 또한 현재의 한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

- 기본적으로는 미국처럼 특정 한도를 준수하는 방식
 - 법정기부금의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 및 특례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하여 한도를 정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를 다시 고려
- 이러한 복잡한 방식은 제도의 이해를 떨어뜨리고, 납세순응비용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발생
- 무엇보다도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외부효과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도 내와 한도 외의 기부금 금액간에 어떠한 외부효과 차이도 없음
- 다른 논리는 한도내의 지출은 타인을 위한 것이고, 한도를 넘어선 지출은 자신

의 만족도를 위한 것이지만, 실체가 이러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한도를 기준으로 차별하면 기부자의 경우는 공익성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이 달라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기부단체는 공익성에 비례하는 것이 가능
 - 현재는 기부자의 경우는 한도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모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 한도내에서는 공익성과 무관하게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비합리적인 방식일 수가 있으므로 한도가 아니라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것이 더 적절
 - 그러나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기부자 기준으로 공익성 차별이 불가능하므로 기부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나. 기부금 유형 및 단체 분류

① 외국사례의 시사점

-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조세지원제도의 강도는 외부효과에 비례하여야 함
 - 외부효과가 가장 강력한 분야는 순수공공재이고, 외부효과가 큰 분야는 도로, 철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
 - 이 밖에 공공 교육, 공공 의료, 공공 연구개발 등도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상태

- 우리나라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의 유형이 다양하고 추가로 개인 및 법인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여 제도가 복잡
 - 또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부금 단체간 세제지원 차별

- 기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미국은 사실상 2개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은 구분이 없는 상태
 - 미국의 경우에 소득한도 20%는 자본이득자산만 대상
 - 일본은 다양한 기부금 유형이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동일

- 구분의 방식을 보면 기부 받는 단체의 공익성이 기준으로 작용
 - 복지, 교육, 의료 등 기능 이외에 단체의 실질적인 자선 활동 정도가 기준
 -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자선단체는 우리나라의 법정기부금으로 분류
 - 우리나라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자선단체이지만 자산, 지출, 모집 형태(다수의 지원) 등을 점검하여, 그 성격이 약한 경우에 해당
 -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인 경우에도 세법상의 차별이 발생
 - 일본은 세법상의 차별은 없지만 대상 단체 여부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실질적인 활동이 구분의 기준
 - 지정기부금 : 다수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법규로 지정) 및 단체
 - 특정공익법인: 시행령으로 정하며, 공공법인·공익법인으로 주된 업무가 자선, 교육, 문화 등
 - 인정NPO법인: 조특법에 따라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정되고, 국제청장이 인증하는 법인으로 보건, 의료, 교육, 복지 등이 대상

② 개선 방안

- 외국도 동일한 기능(예: 사회복지)을 사유로 세법상의 대우가 동일한 것은 아님
 - 기능만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선(공익성)기관의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
- 불가피하게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 논란을 축소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
-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유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
 - 기본적인 원칙은 단체를 기준으로 외부효과(공공성)가 큰 분야는 법정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
 - 교육, 의료, 재난구호 등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자선 성격이 강하므로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

- 영리 성격의 단체이거나 자선 성격이 약한 경우는 제외

< ① 안 : 법정기부금 대상을 현행 수준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유지 >

□ 법정기부금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분야에 대한 기부금은 정부 예산이 그만큼 절약하는 효과를 보유
- 천재지변 관련 지원 : 사실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 공공 교육 및 의료기관 : 비영리단체만 해당, 용도는 현재처럼 지정
- 자선이 주목적인 단체 :
 - 기부금품 모집·배분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
 - 기부금품 모집·배분을 공개, 외부감사, 결산서 등 공개
 - 수입기부금의 15% 미만 운영비로 사용 등

□ 장단점

- 장점
 - 특례기부금 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고 법정기부금 단체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
 - 일본, 독일, 대만 등 다수 국가가 법정기부금은 제한적으로 운용
- 단점
 - 현행 특례기부금 단체 상당수가 지정기부금으로 바뀌어 기부 활성화에 반한다는 비판 가능성

< ② 안 : 법정기부금 단체를 폭넓게 규정 >

□ 법정기부금 단체

- ①안 +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개별법상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

□ 요건 : 수입액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정

- 기부금수입 및 정부지원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단체 총수입액의 1/2이상
 - 정부지원액은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기준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참조)

□ 장단점

- 장점
 - 소득공제 한도가 일정부분 확대되는 결과가 되어 기부 활성화 방향에 부합
 - 특례기부금 단체 중 대부분이 수입액 요건만 충족하면 법정기부금단체로 될 수 있음
 - 기부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공제한도 50%가 적용되는 단체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잡고 있음
- 단점
 - 제도 간소화(특례기부금 폐지) 과정에서 특례기부금단체 뿐만 아니라 일부 지정기부금단체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확대
 - 자선단체에 해당하지만 수입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가능성

※ 참조

□ 공공기관운영법상(\$4 2호) 공공기관 지정 요건

-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정부지원액의 계산 : 공공기관운영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금액

*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① + ② + ③을 말함

- ①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 ②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 ③ ① 및 ②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 총수입액의 계산: 공공기관운영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액

*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

⇒ 구체적 산식(별표 1) : ① - ② + ③

- ①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
- ② 가 + 나 + 다
 - 가.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총당금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세무상 준비금 환입액 등)
 - 나. 정부자금 또는 민간자금을 수혜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손익계산서에 정부자금액 또는 민간자금액을 계상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한 수입액으로서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실질적인 수입액이 아니라고 인정한 금액
- ③ 정부로부터 이전 수입액(출연금,보조금 등) 및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등으로부터 이전 수입액(부담금 등) 중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출자금은 제외하며 당해 연도 유입액에 한한다)

다.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단체 구분 통일

- 기부금 유형별로 분류한 단체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음
 - 법인은 본질적으로 소득자의 비용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며,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음
 -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이 중심이 되는 것이 합리적
 - 개인과 법인간의 차이는 복잡한 제도로 인한 납세순응 비용 증대

[표 V-4] 개인/법인에 대한 현행 기부금 분류 비교

	개 인	법 인
법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이재민 구호금품 ④ 특별재난지역 복구 용역 ⑤ 사회복지시설 ⑥ 불우이웃 ⑦ 학교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⑨ 대한적십자사 ⑩ 문화예술진흥기금 ⑪ 10만원 초과 정치자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이재민 구호금품 ④ 교육기관
특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독립기념관 ③ 특정연구기관 ④ 결식아동/빈곤층 ⑤ 공익법인 기부용 신탁	① 문화예술진흥기금 ② 의료기관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④ 독립기념관 ⑤ 특정 연구기관

	⑥ 국민신탁법인 ⑦ 박물관, 미술관 자료 ⑧ 국제행사조직위원회 ⑨ 휴면예금관리재단 ⑩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⑦ 정부출연연구기관 ⑧ 한국교육방송공사 ⑨ 한국국제교육재단 ⑩ 결식아동 및 빈곤층 아동
우리 사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	①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② 유아교육법 등 공익성기부금 ③ 조합 또는 협회 회비 등 ④ 비영리 민간단체 중 요건 충족	①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② 공익성 지정기부금

-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상반된 방식을 사용
 - 미국은 법인의 기부금에 대하여 유형에 따른 세법상의 차별은 없는 반면 전체 한도를 10%로 규정
 - 반면 개인은 기부금 유형별로 한도가 차이
 - 반면 일본은 기부금 유형별로 한도가 상이
 - 반면 개인은 전체 한도로 규제

- 법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법인은 본질적으로 소득자의 비용이 아닌 주주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소득으로 대리 기부하는 형태
 - 기부가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 다만, 아직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기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 동일한 기부금단체에 대해서는 개인·법인 기부간 세제지원(소득공제)을 일치

- 불가피하게 개인에게만 조세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개인”이 기부한 것에만 해당

한다는 내용을 추가

- 정치자금, 우리사주, 특별재난지역내 자원봉사
- 현재의 한도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납세순응비용을 증대시키므로 단순화
 - 또한 한도 내와 한도 외의 기부금액 간에 외부효과 차이가 있거나 개인의 만족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다. 기부금 세제지원 수준 확대

- 현행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한도를 기준으로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특히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많음
 - 그러나 기부금 한도의 확대는 대규모 기부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소득의 50% 정도로 대규모로 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 따라서 대부분 납세자의 경우는 한도를 확대하여도 기존 한도 내의 기부를 하고 있을 것이므로 한도 확대에 의한 혜택이 없을 것
- 그렇지만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을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연구, 환경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상당수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검토
 - 개인 위주 기부 활성화가 바람직하므로 개인 지정기부금을 중심으로 검토
- 장점
 - 기부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효과)
 - 특례기부금(소득공제 한도 50%)을 폐지함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조정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주요 외국의 기부금 소득공제 수준을 감안
 - 일본 40%, 미국 30%, 대만 30%, 홍콩 25%

□ 단점

- 금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20%로 확대된 것이므로, 그 효과를 보아가며 확대함이 바람직
- 개인 기부자 대부분이 현행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있으므로 공제한도 확대를 통한 기부 활성화 효과 불투명
 - 한도를 일부 초과하더라도 이월공제(5년)를 통해 공제 가능

3. 금전 이외의 기부

- 현행 조세법은 금전기부를 중심으로 하여 기부금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제지원이 필요함
 - 특히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기부 절대액수 증가나 기부건수 증가의 한계가 있고, 사회전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전 기부방식을 벗어나 주식, 부동산, 용역 등 다양한 기부형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보완과 세제를 지원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가. 부동산기부

① 현행

- 부동산 기부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종류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기부자산에 대한 기부가액 평가, 저당권설정, 임차인과 관계,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쟁송, 농지나 임야 등 법인기부가 불가능한 부동산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부동산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취득의 제한, 시가평가의

문제점(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부담부증여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함.

- 농지의 경우 경작자, 임야 등은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인한 취득의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임.

- 부동산기부의 경우 기부자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부 받는 법인단체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 추가 발생과 고유목적사업에 사실상 사용이나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기부 받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수익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 농지, 임야 등은 현실적으로 보유에 따른 수익보다 비용이 더 발생함

- 부동산기부 특성상 평가가액이 고액임으로 기부자가 필요경비산입이나 기부금특별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없어 기부금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동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음

- 부동산기부의 경우 전세권, 임차인, 피담보채권 등 부담부 증여재산은 유상대가에 해당하여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적인 납부와 기부금한도초과부분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부동산기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농지의 경우 경작자, 임야 등은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인한 취득의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임.

-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전세권자, 임차인, 피담보채권으로 인해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기부단체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문제가 대두 됨.

② 개선 방안

-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와 처분기한 설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경작자가 아닌 경우 농지이전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어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기부형태로 비영리법인단체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 인정이나 토지거래허가의 완화 등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취지에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기부시 법적 제한을 완화하여야 함.
- 부동산기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수익이 적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기한 처분기한을 두어 처분가액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지원이 필요함

□ 고액부동산기부에 따른 이월공제 확대

- 부동산의 경우 고액이 대부분으로 현행 금전 기부금을 중심으로 이월공제기간인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사회환원기부신탁의 경우 3년)보다 국가 재정수입 감소의 최소화 방향에서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여야 함.

□ 부동산평가 방법의 단일화

- 현재 지정기부금의 경우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의 경우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 기부의 경우 재산종류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고 부동산평가에 객관성이 있어야 함으로 사실상 시가평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예) 토지와 건물: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등

□ 부담부증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부동산 기부가액의 평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가평가보다는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 부동산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차원에서 과세이연 제도를 두어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기부단체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또한, 과세이연기간을 어떤 시점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과세이연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경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움.

- 아울러 부동산 등 증여시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고, 수증자산 처분시 그 처분대금도 수증자에게 귀속되므로 과세이연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음.
- 통상의 과세이연제도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 또는 종전자산의 당해 처분대가를 정책적 목적에 사용토록 하고 당해 취득 등 자산의 처분대가를 수취할 때까지 과세이연함.

③ 부담부자산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부담부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부담 부분을 제외한 순자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되, 부담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부담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실질이 유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임
- 채무를 포함하여 자산을 기부한 경우 기부로 인한 채무가 소멸되므로 채무 상당액만큼 현금을 받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사 례 >

◇ 시가 10억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여(취득가액 5억원, 근저당설정 5억원)

- 근저당이 설정된 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
- 양도가액(5억원) = 10억원 × 5억원 / 10억원
- 취득가액(2.5억원)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양도차익 2.5억원

- 현실적으로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부담부자산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저당권설정 등을 통해 취득한 후 기부를 하게 되므로 부담부증여 재산 기부를 막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을 하게 됨
- 따라서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부담부자산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이 필요함.

-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는 현금유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전세권·보증금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등을 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부담부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기부하면 현금흐름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부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부담부자산 기부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분할납부 또는 일정금액 이하의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방안 강구
 - 부담부자산 증여에 대해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으로 세제지원시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채무인계 조건으로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다른 경우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다만, 기부문화의 확대 등을 위해 세법상 지원제도를 둔다하더라도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자산 및 채무종류, 채무액을 제한할 필요
 - 거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부담한 후 해당 자산을 증여 형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있음.
 - (예) 취득가액 5억원,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을 담보로 8억원을 빌린 후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자산으로 기부시 실질적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운영 할 수 없음

- 부담부자산 기부자산에 대하여 일정 부동산수입금액 미달자산에 대한 매각기한을 규정한 후 매각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수행하도록 강제 규정
 - 금전이외 자산기부의 경우 공정가액 대비 수익률이 예금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 특히 부동산기부중 건물을 제외한 임야, 전·답 등은 연간 수입금액보다 기타 체세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며 여기에 부담부증여로 인한 자산기부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됨.
 - 따라서 일정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기한 이내에 매각하여

전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예) 수입금액: 예금금리 수준

- 매각기한: 3년 또는 5년

* 수입금액이 예금금리수준에 미달하는 차이에 따라 정함.

나. 주식 기부

① 현행

- 주식기부는 비영리단체에게 고정적인 배당금수익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히 수행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가액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주식기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은 없음.
 - 다만 상법상 양도제한주식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을 기부 받은 비영리 단체가 어느 정도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주식소유비율은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기부주식 가액은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를 원칙으로 있음.
 -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증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후 추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등은 주식명의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식의 취득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것도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표 V-5]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보유시 과세내용

구분	판정시기	초과지분을	과세하지 않는 경우	과세
	출연 받을 때	5%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초과분은

취 득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 득 시	(10%)	과세제외 함. a.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b.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c.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 식을 취득·출연 받고 d.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보 유	96.12.31 기준	5%		초과보 유분 가산 세부과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30% (50%)	a. 성실공익법인 인 경우 b.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 익법인 등	

* ()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 해당함.

- 주식기부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에게 고정적인 배당금수익을 통한 고유 목적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³⁰⁾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09년도 회계연도 기준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비율은 평균 1.12%로 예금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면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재벌소속 공익법인의 이사장중 총수일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와 총수일가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영향력하에 있는 실정임.
 - 출연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법인은 거의 없는 실정임.
- 2009.12.31현재 지분보유 계열사 수: 101개(상장회사71개. 비상장회사30개)

□ 주식기부의 경우 조세문제

- 부담부증여의 형태가 아닌 사항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부담부증여의 형태가 있을 수 없음.

30)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재벌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현황 및 지배구조' 경제개혁레포트 2010-8호 2010.06.21

- 법인의 경우 고액의 주식기부의 경우 기부금한도초과가 발생하여 법인세부담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혜택인 주식기부의 주식소유비율을 확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계열사 지배주주 일가의 조세회피와 지배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② 개선 방안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완화는 신중할 필요

-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5%, 성실공익법인 10%) 확대는 현행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배당금 수입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할 필요성은 적음
- 다만, 구원장학재단의 경우처럼 선의의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결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

다. 용역 기부

① 현행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반대급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인 용역제공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나
 - 용역의 제공은 금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자와 대다수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기부문화 정착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시기(1980년대)에 기업체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해당기업에도 세제혜택을 부여 함

-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 용역에 대해 세제상 직접적으로 기부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용역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별도로 하고 있음. (소득세법제34조2항4호, 소득세법시행령제81조5항)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②)

① 봉사일수×5만원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 (소수점이하는 1일로 함)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② 개선 방안 및 문제점

□ 용역기부에 대한 가액 산정의 다양화

- 현행 용역의 기부는 시간기준으로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으나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용역은 경제적 가치가 통상의 자원봉사활동보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전문가의 용역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용역기부자간 시간당 동일한 기부금액 계산이 아닌 용역기부자간 기부 가액의 산정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예) 용역기부자의 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시간당 용역의 가치를 산정하여 기부금액을 정하는 방법 등
- 그러나, 용역기부 가액 산정의 다양화 방안은 일반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가액 산정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예) 기부자의 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체능력이 왕성한 청년 실업자의 자원봉사가치보다 신체능력이 낮지만, 금융소득이 많은 고령 퇴직자의 자원봉사가치가 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
- 또한,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발하는 등 불형평성

문제가 있고, 용역기부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쉽지 않아 남용 가능성이 클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용역기부 가액 산정을 다양화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

□ 용역기부의 범위 확대

- 현행 소득세법상 자원봉사 활동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주고 있어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와 사회복지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게 되므로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용역기부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용역기부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조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는 등 기부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용역기부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보다는 대학입시 성적, 근무성적 반영 등 현행 지원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

4.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방안

① 현행

□ 공익법인의 경우 소규모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과 종교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에서 현재 제외하고 있음

- 다른 공익법인과 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록 총자산가액은 소액이지만 기부금수입 또는 수입금액등은 일반 다른 공익법인보다 클 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기준 필요

□ 지정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의 모집·활용내역을 개별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법정 및 특례기부금 단체와 2008년 이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홈

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집·활용내역의 공개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기부금 모집·활용내역을 공개하는 단체가 사실상 제한적이어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검증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

□ 기부금 제도, 기부금단체 명단 등 기부관련 정보가 기부금단체별로 개별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고 정보제공 서비스가 미흡하여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의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

- 수요자가 아닌 정보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기계적 정보만 제공
- 미국의 경우 “Guide Star”라는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비영리기관 명단 및 사업·회계·조직·기부금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음.(우리나라 2007.3월 (재)가이드스타 설립)

② 개선 방안

□ 기부금단체 관리를 위하여 기부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부금단체간 자발적인 투명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예: 국세청)

※ 홈페이지의 기능

- 기부금 관련 법령·제도, 세법상 기부금단체 명단, 기부금 통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
- 기부금단체 개별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기부금 종합 포털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모집·지출 명세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 등 공시
- 국내외 기부 사례 및 다양한 형태의 기부·자원봉사 안내(예: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

□ 결산서류 등 공시가 제외되는 소규모 공익법인 기준에 총자산금액은 완화하고 수입금액 기준을 추가하여 두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필요

- 다만, 결산서류 공시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행성과 검토 및 의견을 수렴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완화하되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규모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결산서류 등 공시는 특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하나 외부회계감사비용이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됨으로 회계감사보고 또는 외부전문가 확인은 축소하고, ‘결산서류 공시’등 대상 기부금 단체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관리의무규정 신설은 바람직하나, 일부 공익법인은 의무규정 제외로 다른 공익법인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예) 종교단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개설신고 제외
* 종교단체도 일반 공익법인과 같은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대신 인센티브제도 운영이 바람직

5. 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에 대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공제, 필요경비 산입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에 한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규정에서 일부 세액공제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을 병행하여 시행

-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1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있음.

□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는 나라는 정확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으나 독일에서는 개인이 정당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의 50%를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한도 또는 특별공제는 기부금의 최대 한도 1,650유로,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3,300유로임
-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에 소득공제를 병행, 독일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이나 소득공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에 차이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크게 실익도 없는 것이 현실

□ 정치자금법상 독일에서와 같이 세액공제 한도를 두되 세액공제방식이나 소득공제 방식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VI. 결론

1. 비합리적 분야의 개선

가. 기부금 유형 단순화

-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는 유형도 매우 불합리하고, 법
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속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등 구분의 애매성으로 인하여 모집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것이 현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부금 유형의 구분, 공제율에 있어서도 차
이가 있어 조세전문가로서도 이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

- 따라서 기부금 유형을 단순화하고, 개인과 법인 기부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례기부금은 폐지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

- 법정기부금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분야에 대한 기부금은 정부 예산이 그만큼 절약하는 효과를 보유
 - 천재지변 관련 지원 : 사실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 공공성이 있는 기관 : 법률 및 조례로 설치된 기관
 - 상업적 성격을 보유한 공기업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적용하여 준정부기관이 대상)
 -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혼재된 상태이므로 대상 단체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
 - 또한 (사실상)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그 성격을 중심으로 보훈, 사회복지,
교육, 의료, 학술·연구, 환경보전 등의 분야로 한정

- 교육 및 의료기관 : 비영리단체만 해당, 용도는 현재처럼 지정
- 자선이 주목적인 단체 : 대한적십자사(공공기관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나. 개인과 법인의 대상단체 통일

-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단체 통일
 - 개인과 법인간의 차이는 복잡한 제도로 인한 납세순응 비용 증대
 -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통일

다. 기준소득 금액 단순화

- 특별한 중요성이 없으면서도 한도 기준 계산이 복잡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 형태로 단일화 검토 필요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2. 기부 문화 활성화

가. 한도 확대 검토

- 현행 기부금(개인) 제도는 한도를 기준으로 차별
 -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 특례기부금: 한도가 소득의 50%
 - 지정기부금: 한도가 소득의 20%

- 종교단체: 한도가 소득의 10%
- 기부금 분류방식을 법정과 지정기부금으로 변경하면 한도 조정이 필요(개인)
 - 다수의 특례기부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어 법정기부금 대상이 많아지므로 법정기부금의 한도는 현행 100%를 유지
 -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정기부금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를 10%로 고정

나. 이월 공제 조정

- 이월공제가 없다면 일시에 대규모로 기부하는 기부자가 불리
 - 이월공제가 없으면 분할하여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분할 기부자와 일시 대규모 기부자와 형평성이 문제
- 미국의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이월공제가 없음
- 이월공제는 한도가 작은 지정기부금에 유리한 방식
 -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에 한도가 존재하면 소득공제되는 기부금 규모가 작아져서 적용 세율이 조금만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
 - 이월되는 다음 연도에는 다시 고소득자의 높은 세율부터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한도가 작을수록 유리
 - 예시: 과표 1억, 지정기부금 한도: 과표의 10%, 법정기부금 한도: 과표의 100%, 기부금 1억
 -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세액이 0원이 되고 세금 2,186만원 감소
 - 그러나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매년 1,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세율이 35%인 경우에는 매년 350만원의 세금이 절약되고, 10년간 이월되면 3,500만원의 세금이 감소
- 따라서 현행처럼 기부금 유형별로 세법상의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공제는 한

- 도에 대한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지정기부금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
- 따라서 기부금별 이월공제 수준을 정함에 있어 법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다. 금전 이외의 기부

- 금전 기부방식을 벗어나 주식, 부동산, 용역 등 다양한 기부 형태에 대하여 연구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보완과 세제 지원이 필요함.
 - 유언공증의 경우 기부금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유언공증의 경우 사망당시의 상속세를 비과세하게 되며, 유언공증 당시 가액평가와 사망당시의 재산가액에 따른 시간적 차이, 가액의 불확실한 추정문제가 불가피 함.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의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므로 이중혜택여부가 발생할 수도 있어 기부자의 유언공증의 경우 기부금 공제여부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함.
 - 기부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함으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관리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봄.

- 부동산
 - 부동산 기부의 경우는 유상부분과 무상기부인 혼합의 형태가 대부분으로 일정한 유상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이 필요
 - 예) 부담부증여, 임차인 인수 등
 - 부동산 기부 확대를 위하여 기부받는 단체에 대한 소유와 처분에 대한 규제와 세제혜택이 필요
 - 예) 농지, 임야 등
 - 부동산 등의 가액 평가 시가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 보충적 평가방법이 합리적
 - 1) 가액도 크고, 부동산 종류도 다양하며
 - 2) 보수주의 원칙에 합당하며 재무상태 견고
 - 3) 부동산 처분이나 수익 또는 주주배당 목적이 아님

- 4) 외부회계감사(100억원), 세무확인 대상(10억원)과 연관되므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가능

□ 주식

-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5%, 성실공익법인 10%) 확대는 현행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주식보유한도가 완화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도적 보완 검토 필요

□ 용역기부

- 용역제공에 대한 기부금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고, 무상용역 제공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공정가액 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
- 개인의 소득, 연령, 성별, 능력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방법,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등도 매우 다양
- 자원봉사의 성격상 특별한 기술과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에 용역제공에 대한 기부가액 평가를 획일적으로 정한 가액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용역가액을 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일할계산하며, 용역기부의 증빙방법과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 및 자격 등을 정하는 것이 타당
- 용역기부에 대한 관리문제 행정적 부담면에서 타당성 검토 필요

예) 1)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 문제

2) 용역기부에 대한 보고의무, 용역기부에 대한 영수증발급 권한을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지→ 남용 가능성

□ 부담부자산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현실적으로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부담부자산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
- 조세채권 확보 및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나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부담부자산 기부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분할납부 또는 일정금액 이하의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방안 강구
 - 다만, 조세회피 및 공익법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자산 및 채무종류, 채무액 등을 제한하는 등 최소

화할 필요

- 부담부자산 기부 자산에 대하여 일정 부동산수입금액 미달자산에 대한 매각기한을 규정한 후 매각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수행하도록 강제 규정

3. 투명성 강화

가. 관리 강화

□ 기부금 단체 투명성 관련제도

-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단체별로 형평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 허위, 부당공제, 악용 사례는 기부문화정착 저해요인으로 기부금관리단체에 대한 투명성 관리제도가 필요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도 개선방안

- 결산서류 등 공시가 제외되는 소규모 공익법인 기준에 총자산금액을 완화하고 수입금액 기준을 추가하여 공시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
- 다만, 결산서류 공시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행성과 검토 및 의견을 수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부과, 규모가 큰 종교단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도 필요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완화하되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규모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결산서류 등 공시는 특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함
- 외부회계감사비용이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
- 결산서류 등 공시는 특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함

- 외부회계감사비용이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발생

나. 정치자금

-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세액공제는 일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병행하고 있어 단순화 검토 필요
 - 세액공제방식을 택하므로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소득세의 형평성과 납세의식에서도 문제점 대두
 - 예) 정당에 지급한 정치자금의 경우 산출세액이 10만원이 경우 10만원공제 10% 효과, 100만원인 경우 정치자금을 지급하면 10% 효과, 1,000만원이면 1% 효과로 합리적이지 못하며 소액기부자의 경우 소득세 납세의식 저하 우려
 - 대다수 나라의 외국사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혼합형보다는 독일과 같이 선택적 적용이 합리적으로 보임
 - 예)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중 선택적용 방안으로 개선하고,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의 10%한도, 소득공제의 경우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원

다. Portal 구축

- 기부금단체 관리를 위하여 기부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부금단체간 자발적인 투명성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홈페이지의 기능
 - 기부금 관련 법령·제도, 세법상 기부금단체 명단, 기부금 통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
 - 기부금단체 개별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기부금 종합 포털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모집·지출 명세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 등 공시
- 국내외 기부 사례 및 다양한 형태의 기부·자원봉사 안내(예: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

참고문헌

- 대주회계법인, 2010, 『적십자사 세제·재정지원 등 해외사례 용역연구』, 대한적십자사.
- 민태욱, 2008,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조세법 연구』, XIV-3, 58 ~ 95.
- 박기백, 「조세지원모형의 모색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논집』, 제11집, 한국재정학회, 1996. 10.
- 서희열·심충진·조영탁, 2008,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5호.
- 손원익, 2009, 「기업 기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재정학연구』, 제2권 제4호, 29 ~ 60.
- , 『기부금 현황과 관련 세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 손원익·박태규, 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이상신·박훈,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2009. 2
- 이승희 2010.6.21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및 지배구조」. ERRI 경제개혁연구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2008년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조선주·박태규, 2007, 「정부보조금의 민간(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회복지관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제12권 제2호, 65 ~ 88.
- 표갑수, 「자원봉사론」, 나남출판사.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기부금 지원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7,
- ,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09,
- Abrams, B. and M. Schitz,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 Transfers on Pri

- 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 Choice* 33, 1978, pp. 29~39.
- Andreoni, J.,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s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1989, pp. 1447~1458.
- ,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The Economic Journal* 100, 1990, pp. 464~477.
- Becker, G.,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974, pp. 1063~1091.
- Bernheim, D. and K. Bagwell, "Is Everything Neutr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 1986, pp. 308~338.
- Bergstrom, T., L. Blume and H. Varian, "On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9, 1986, pp. 25~49.
- Johansson, Olof, "Optimal Pigovian Taxes under Altruism," *Land Economics* 73 (3), 1997, pp. 297~308.
- Roberts, R., "Financing Public Goo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1987, pp. 420~437.
- Sandmo, A., "Optimal Taxation in the Presence of Externalities,"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7, 1975, pp. 86~98.
- Warr, P., "The Private Provision of A Public Good Is Independent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Economic Letters* 13, 1983, pp. 207~211.

- 용역발주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주영섭 (yungsup@mosf.go.kr)
	조세정책국장	김낙희 (nh1112@mosf.go.kr)
	법인세제과장	안세준 (sjahn@mosf.go.kr)
	담 당 자	황인웅 (hibear73@mosf.go.kr)